

# 김해 안동 에피트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55-329-7511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김해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4.11.07. 이전부터 계속 거주)		김해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11.07.(금)	2025.11.17.(월)	2025.11.18.(화)	2025.11.19.(수)	2025.11.26.(수)	2025.11.27.(목)~ 2025.12.03.(수)	2025.12.08.(월)~ 2025.12.10.(수)

##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지역은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며 항공기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총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총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분양권 등 신규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분양권 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brand.hldni.com/gimhae-andong/>)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준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APT 잔여세대(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 재공급)	O				X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1.07.(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김해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4.11.07.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5.11.17.(월)	2025.11.18.(화)	2025.11.19.(수)	2025.11.26.(수)	2025.11.27.(목)~ 2025.12.03.(수)	2025.12.08.(월)~ 2025.12.10.(수)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 사업주체 견본주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 청약통장 가입은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 청약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해 안동 에피트 견본주택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46 (삼정동 1018-3)</li> </ul>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최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최소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추첨 및 계약기간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공급대금 6억 이상 세대의 경우 공급계약 체결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어 「인지세법」 제1조에 의거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균등납부 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12.31.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 (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총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자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연대균등 각각 50%납부) 부담하며, 최초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전매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전매자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재원 (☎1577-55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없음.	없음.

##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 38639호(2025. 11. 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안동 118-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6층, 지상 12~29층, 16개동 총 1,539세대 중 일반분양 765세대

[특별공급 287세대(기관추천 45세대, 다자녀가구 74세대, 신혼부부 106세대, 노부모부양 21세대, 생애최초 4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sup>2</sup>,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464	01	59.9722	59	59.9722	23.3751	83.3473	40.5767	123.9240	32.0876	5	-	-	1	-	-	1	4	1	
	02	68.8390A	68A	68.8390	24.6672	93.5062	46.5758	140.0820	36.8317	56	5	5	12	1	5	28	28	8	
	03	68.9016B	68B	68.9016	24.7701	93.6717	46.6182	140.2899	36.8652	6	-	-	1	-	-	1	5	2	
	04	77.9854	77	77.9854	24.7124	102.6978	52.7643	155.4621	41.7254	50	5	5	11	1	4	26	24	5	
	05	84.9542A	84A	84.9542	24.9085	109.8627	57.4793	167.3420	45.4540	252	25	25	58	7	23	138	114	17	
	06	84.9852B	84B	84.9852	24.8258	109.8110	57.5002	167.3112	45.4706	42	4	4	9	1	4	22	20	4	
	07	84.8992C	84C	84.8992	25.1918	110.0910	57.4422	167.5332	45.4246	36	3	3	8	1	3	18	18	4	
	08	84.9542D	84D	84.9542	24.9085	109.8627	57.4793	167.3420	45.4540	28	3	3	6	1	2	15	13	1	
	09	110.9716A	110A	110.9716	27.8217	138.7933	75.0824	213.8757	59.3744	130	-	13	-	4	-	17	113	6	
	10	110.8623B	110B	110.8623	28.0151	138.8774	75.0085	213.8859	59.3159	57	-	6	-	2	-	8	49	2	
	11	110.7222C	110C	110.7222	27.9813	138.7035	74.9137	213.6172	59.2410	56	-	5	-	2	-	7	49	2	
	12	110.9716D	110D	110.9716	27.8217	138.7933	75.0824	213.8757	59.3744	28	-	3	-	1	-	4	24	1	
	13	135.8916	135	135.8916	35.2894	171.1810	91.9430	263.1240	72.7077	19	-	2	-	-	-	2	17	1	
합 계											765	45	74	106	21	41	287	478	54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m^2$ ) $\times 0.3025$  또는 공급면적( $m^2$ ) $\div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벽체, 주동출입구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등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기계/전기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을 포함한 기타면적입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하여 면적 합산 과정에서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주거전용)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 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물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주택형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84A, 84D, 110A, 110D타입의 경우 각 타입별 모든 면적은 동일하나 설계상 팬트리 창호 크기 차이로 인해 타입이 나눠졌으니, 견본주택을 통해 필히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 순위별 및 주택형별로 접수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동·호수가 자동 배정됩니다.
-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동/라인	층	세 대 수	분양가			계약금 5%		중도금 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공급금액	계약시	계약후 30일이내	1회 (10%)	2회 (10%)	3회 (10%)	4회 (10%)	5회 (10%)	6회 (10%)	입주 지정일	
										2026.03.16	2026.08.16	2027.02.16	2027.10.16	2028.03.16	2028.08.16		
59	107동 2호	1층	1	115,019,300	256,010,700	-	371,030,000	5,000,000	13,551,500	37,103,000	37,103,000	37,103,000	37,103,000	37,103,000	37,103,000	129,860,500	
	107동 1호	9층	1	116,897,900	260,192,100	-	377,090,000	5,000,000	13,854,500	37,709,000	37,709,000	37,709,000	37,709,000	37,709,000	37,709,000	131,981,500	
		12층	1	117,056,000	260,544,000	-	377,600,000	5,000,000	13,880,000	37,760,000	37,760,000	37,760,000	37,760,000	37,760,000	37,760,000	132,160,000	
	107동 2호	14층	1	117,211,000	260,889,000	-	378,100,000	5,000,000	13,905,000	37,810,000	37,810,000	37,810,000	37,810,000	37,810,000	37,810,000	132,335,000	
	107동 1호	26층	1	117,837,200	262,282,800	-	380,120,000	5,000,000	14,006,000	38,012,000	38,012,000	38,012,000	38,012,000	38,012,000	38,012,000	133,042,000	
68A	104동 3호 105동 1,2,3호	1층	4	130,258,080	285,901,920	-	416,160,000	5,000,000	15,808,000	41,616,000	41,616,000	41,616,000	41,616,000	41,616,000	41,616,000	145,656,000	
	104동 1,3,4호 105동 4호 106동 1,2호	2층	6	131,143,870	287,846,130	-	418,990,000	5,000,000	15,949,500	41,899,000	41,899,000	41,899,000	41,899,000	41,899,000	41,899,000	146,646,500	
		104동 1,3호 105동 1,2,3,4호 106동 1,2호	3~4층	8	131,763,610	289,206,390	-	420,970,000	5,000,000	16,048,500	42,097,000	42,097,000	42,097,000	42,097,000	42,097,000	42,097,000	147,339,500
			5~7층	9	132,208,070	290,181,930	-	422,390,000	5,000,000	16,119,500	42,239,000	42,239,000	42,239,000	42,239,000	42,239,000	42,239,000	147,836,500
	104동 4호 105동 1호 106동 1,2호	8~10층	6	132,386,480	290,573,520	-	422,960,000	5,000,000	16,148,000	42,296,000	42,296,000	42,296,000	42,296,000	42,296,000	42,296,000	148,036,000	
		11~13층	4	132,561,760	290,958,240	-	423,520,000	5,000,000	16,176,000	42,352,000	42,352,000	42,352,000	42,352,000	42,352,000	42,352,000	148,232,000	
	104동 4호	14~16층	1	132,740,170	291,349,830	-	424,090,000	5,000,000	16,204,500	42,409,000	42,409,000	42,409,000	42,409,000	42,409,000	42,409,000	148,431,500	
	104동 3호	17~19층	1	132,915,450	291,734,550	-	424,650,000	5,000,000	16,232,500	42,465,000	42,465,000	42,465,000	42,465,000	42,465,000	42,465,000	148,627,500	
	104동,105동 3호	20~22층	2	133,093,860	292,126,140	-	425,220,000	5,000,000	16,261,000	42,522,000	42,522,000	42,522,000	42,522,000	42,522,000	42,522,000	148,827,000	
	104동 4호 105동2,3,4호	23~25층	6	133,272,270	292,517,730	-	425,790,000	5,000,000	16,289,500	42,579,000	42,579,000	42,579,000	42,579,000	42,579,000	42,579,000	149,026,500	

	104동 3,4호 105동 4호	26~28층	3	133,447,550	292,902,450	-	426,350,000	5,000,000	16,317,500	42,635,000	42,635,000	42,635,000	42,635,000	42,635,000	42,635,000	42,635,000	149,222,500
	104동 1,3호 105동 2,3호 106동 1,2호	최상층	6	142,308,580	312,351,420	-	454,660,000	5,000,000	17,733,000	45,466,000	45,466,000	45,466,000	45,466,000	45,466,000	45,466,000	45,466,000	159,131,000
68B	104동 2호 113동 4호	1층	2	130,258,080	285,901,920	-	416,160,000	5,000,000	15,808,000	41,616,000	41,616,000	41,616,000	41,616,000	41,616,000	41,616,000	41,616,000	145,656,000
		3~4층	2	131,763,610	289,206,390	-	420,970,000	5,000,000	16,048,500	42,097,000	42,097,000	42,097,000	42,097,000	42,097,000	42,097,000	42,097,000	147,339,500
	113동 4호	14~16층	1	132,740,170	291,349,830	-	424,090,000	5,000,000	16,204,500	42,409,000	42,409,000	42,409,000	42,409,000	42,409,000	42,409,000	42,409,000	148,431,500
		20~22층	1	133,093,860	292,126,140	-	425,220,000	5,000,000	16,261,000	42,522,000	42,522,000	42,522,000	42,522,000	42,522,000	42,522,000	42,522,000	148,827,000
77	107동 3호 108동 4호 113동 1호	1층	3	145,335,540	311,694,460	-	457,030,000	5,000,000	17,851,500	45,703,000	45,703,000	45,703,000	45,703,000	45,703,000	45,703,000	45,703,000	159,960,500
	107동 3,4호 108동 1,4호 113동 1,2호	2층	6	146,324,520	313,815,480	-	460,140,000	5,000,000	18,007,000	46,014,000	46,014,000	46,014,000	46,014,000	46,014,000	46,014,000	46,014,000	161,049,000
	107동 4호 108동 1호 113동 1호	3~4층	4	147,014,580	315,295,420	-	462,310,000	5,000,000	18,115,500	46,231,000	46,231,000	46,231,000	46,231,000	46,231,000	46,231,000	46,231,000	161,808,500
	107동 4호 108동 1호 113동 3호	5~7층	4	147,510,660	316,359,340	-	463,870,000	5,000,000	18,193,500	46,387,000	46,387,000	46,387,000	46,387,000	46,387,000	46,387,000	46,387,000	162,354,500
	113동 1,2호	8~10층	2	147,707,820	316,782,180	-	464,490,000	5,000,000	18,224,500	46,449,000	46,449,000	46,449,000	46,449,000	46,449,000	46,449,000	46,449,000	162,571,500
	107동 3,4호 113동 1,2호	11~13층	5	147,904,980	317,205,020	-	465,110,000	5,000,000	18,255,500	46,511,000	46,511,000	46,511,000	46,511,000	46,511,000	46,511,000	46,511,000	162,788,500
	108동 4호 113동 1,2,3호	14~16층	8	148,102,140	317,627,860	-	465,730,000	5,000,000	18,286,500	46,573,000	46,573,000	46,573,000	46,573,000	46,573,000	46,573,000	46,573,000	163,005,500
	107동 4호 108동 4호 113동 1,2호	17~19층	5	148,299,300	318,050,700	-	466,350,000	5,000,000	18,317,500	46,635,000	46,635,000	46,635,000	46,635,000	46,635,000	46,635,000	46,635,000	163,222,500
	107동 3,4호	20~22층	2	148,499,640	318,480,360	-	466,980,000	5,000,000	18,349,000	46,698,000	46,698,000	46,698,000	46,698,000	46,698,000	46,698,000	46,698,000	163,443,000
		23~25층	3	148,696,800	318,903,200	-	467,600,000	5,000,000	18,380,000	46,760,000	46,760,000	46,760,000	46,760,000	46,760,000	46,760,000	46,760,000	163,660,000
	107동 3호 108동 1호	26~28층	2	148,893,960	319,326,040	-	468,220,000	5,000,000	18,411,000	46,822,000	46,822,000	46,822,000	46,822,000	46,822,000	46,822,000	46,822,000	163,877,000
	107동 3,4호 108동 1,4호 113동 1,2호	최상층	6	158,780,580	340,529,420	-	499,310,000	5,000,000	19,965,500	49,931,000	49,931,000	49,931,000	49,931,000	49,931,000	49,931,000	49,931,000	174,758,500

84A	101동 1,2호 109동 1,4호 110동 1,4호 112동 1,4호 114동 1,4호 115동 1호	1층	11	156,409,600	332,370,400	-	488,780,000	5,000,000	19,439,000	48,878,000	48,878,000	48,878,000	48,878,000	48,878,000	48,878,000	48,878,000	171,073,000
	101동 1,2,6호 109동 1,4호 110동 1,4호 112동 1,4호 114동 1,2,3,4호 115동 1,3호 116동 1,2호	2층	17	157,472,000	334,628,000	-	492,100,000	5,000,000	19,605,000	49,210,000	49,210,000	49,210,000	49,210,000	49,210,000	49,210,000	49,210,000	172,235,000
	101동 1,2,3,4,5,6호 109동 1,4호 110동 4호 112동 1호 114동 1,2,3,4호 115동 1,3호 116동 1,2호	3~4층	29	158,217,600	336,212,400	-	494,430,000	5,000,000	19,721,500	49,443,000	49,443,000	49,443,000	49,443,000	49,443,000	49,443,000	49,443,000	173,050,500
	101동 3,5호 109동 1,4호 110동 1호 112동 1,4호 114동 1,2,3,4호 115동 1,3호 116동 1,2호	5~7층	33	158,748,800	337,341,200	-	496,090,000	5,000,000	19,804,500	49,609,000	49,609,000	49,609,000	49,609,000	49,609,000	49,609,000	49,609,000	173,631,500
	101동 3호 109동 1,4호 110동 1,4호 112동 1호 114동 1,2,3,4호 115동 1,3호 116동 1,2호	8~10층	31	158,963,200	337,796,800	-	496,760,000	5,000,000	19,838,000	49,676,000	49,676,000	49,676,000	49,676,000	49,676,000	49,676,000	49,676,000	173,866,000
	101동 3호 109동 1호 110동 4호 112동 1호 114동 1,2,3,4호 115동 1,3호 116동 1,2호	11~13층	28	159,174,400	338,245,600	-	497,420,000	5,000,000	19,871,000	49,742,000	49,742,000	49,742,000	49,742,000	49,742,000	49,742,000	49,742,000	174,097,000
	110동 4호 112동 1,4호 114동 1,2,3,4호 115동 1,3호 116동 1,2호	14~16층	27	159,388,800	338,701,200	-	498,090,000	5,000,000	19,904,500	49,809,000	49,809,000	49,809,000	49,809,000	49,809,000	49,809,000	49,809,000	174,331,500

	101동 6호 109동 1호 110동 1호 112동 1,4호 114동 1,2,3,4호 115동 1,3호 116동 1,2호	17~19층	29	159,600,000	339,150,000	-	498,750,000	5,000,000	19,937,500	49,875,000	49,875,000	49,875,000	49,875,000	49,875,000	49,875,000	49,875,000	174,562,500
	101동 1호 109동 1,4호 110동 4호 112동 1호 114동 1,2,3,4호 115동 1,3호 116동 1,2호	20~22층	20	159,814,400	339,605,600	-	499,420,000	5,000,000	19,971,000	49,942,000	49,942,000	49,942,000	49,942,000	49,942,000	49,942,000	49,942,000	174,797,000
	101동 1,2호 109동 1호 110동 1,4호	23~25층	6	160,025,600	340,054,400	-	500,080,000	5,000,000	20,004,000	50,008,000	50,008,000	50,008,000	50,008,000	50,008,000	50,008,000	50,008,000	175,028,000
	101동 1,3,5호 109동 1호 110동 1호	26~28층	6	160,240,000	340,510,000	-	500,750,000	5,000,000	20,037,500	50,075,000	50,075,000	50,075,000	50,075,000	50,075,000	50,075,000	50,075,000	175,262,500
	101동 5,6호 109동 1,4호 110동 1,4호 112동 1호 114동 1,2,3,4호 115동 1,3호 116동 1,2호	최상층	15	170,880,000	363,120,000	-	534,000,000	5,000,000	21,7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186,900,000

	108,109,110, 112동 2호	1층	4	156,409,600	332,370,400	-	488,780,000	5,000,000	19,439,000	48,878,000	48,878,000	48,878,000	48,878,000	48,878,000	48,878,000	48,878,000	171,073,000
	109, 110,112동 2호	2층	3	157,472,000	334,628,000	-	492,100,000	5,000,000	19,605,000	49,210,000	49,210,000	49,210,000	49,210,000	49,210,000	49,210,000	49,210,000	172,235,000
	108,109,110 ,112동 2호	3~4층	6	158,217,600	336,212,400	-	494,430,000	5,000,000	19,721,500	49,443,000	49,443,000	49,443,000	49,443,000	49,443,000	49,443,000	49,443,000	173,050,500
	108,112동 2호	5~7층	5	158,748,800	337,341,200	-	496,090,000	5,000,000	19,804,500	49,609,000	49,609,000	49,609,000	49,609,000	49,609,000	49,609,000	49,609,000	173,631,500
	109, 110, 112동 2호	8~10층	3	158,963,200	337,796,800	-	496,760,000	5,000,000	19,838,000	49,676,000	49,676,000	49,676,000	49,676,000	49,676,000	49,676,000	49,676,000	173,866,000
84B	110, 112동 2호	11~13층	2	159,174,400	338,245,600	-	497,420,000	5,000,000	19,871,000	49,742,000	49,742,000	49,742,000	49,742,000	49,742,000	49,742,000	49,742,000	174,097,000

		14~16층	3	159,388,800	338,701,200	-	498,090,000	5,000,000	19,904,500	49,809,000	49,809,000	49,809,000	49,809,000	49,809,000	49,809,000	174,331,500
	108,109,110, 112동 2호	17~19층	5	159,600,000	339,150,000	-	498,750,000	5,000,000	19,937,500	49,875,000	49,875,000	49,875,000	49,875,000	49,875,000	49,875,000	174,562,500
	108동 2호	20~22층	1	159,814,400	339,605,600	-	499,420,000	5,000,000	19,971,000	49,942,000	49,942,000	49,942,000	49,942,000	49,942,000	49,942,000	174,797,000
	108, 109, 110동 2호	23~25층	3	160,025,600	340,054,400	-	500,080,000	5,000,000	20,004,000	50,008,000	50,008,000	50,008,000	50,008,000	50,008,000	50,008,000	175,028,000
	108, 109, 110동 2호	26~28층	3	160,240,000	340,510,000	-	500,750,000	5,000,000	20,037,500	50,075,000	50,075,000	50,075,000	50,075,000	50,075,000	50,075,000	175,262,500
	108,109,110 ,112동 2호	최상층	4	170,880,000	363,120,000	-	534,000,000	5,000,000	21,7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186,900,000
	108,109,110 ,112동 3호	1층	4	156,409,600	332,370,400	-	488,780,000	5,000,000	19,439,000	48,878,000	48,878,000	48,878,000	48,878,000	48,878,000	48,878,000	171,073,000
	109, 110, 112동 3호	2층	3	157,472,000	334,628,000	-	492,100,000	5,000,000	19,605,000	49,210,000	49,210,000	49,210,000	49,210,000	49,210,000	49,210,000	172,235,000
	108,109,110 ,112동 3호	3~4층	5	158,217,600	336,212,400	-	494,430,000	5,000,000	19,721,500	49,443,000	49,443,000	49,443,000	49,443,000	49,443,000	49,443,000	173,050,500
	108, 110동 3호	5~7층	2	158,748,800	337,341,200	-	496,090,000	5,000,000	19,804,500	49,609,000	49,609,000	49,609,000	49,609,000	49,609,000	49,609,000	173,631,500
84C	108, 110, 112동 3호	8~10층	3	158,963,200	337,796,800	-	496,760,000	5,000,000	19,838,000	49,676,000	49,676,000	49,676,000	49,676,000	49,676,000	49,676,000	173,866,000
	110, 112동 3호	11~13층	3	159,174,400	338,245,600	-	497,420,000	5,000,000	19,871,000	49,742,000	49,742,000	49,742,000	49,742,000	49,742,000	49,742,000	174,097,000
	108동 3호	14~16층	1	159,388,800	338,701,200	-	498,090,000	5,000,000	19,904,500	49,809,000	49,809,000	49,809,000	49,809,000	49,809,000	49,809,000	174,331,500
	108,109,110 ,112동 3호	17~19층	6	159,600,000	339,150,000	-	498,750,000	5,000,000	19,937,500	49,875,000	49,875,000	49,875,000	49,875,000	49,875,000	49,875,000	174,562,500
	110동 3호	20~22층	1	159,814,400	339,605,600	-	499,420,000	5,000,000	19,971,000	49,942,000	49,942,000	49,942,000	49,942,000	49,942,000	49,942,000	174,797,000
	108, 109, 110동 3호	23~25층	4	160,025,600	340,054,400	-	500,080,000	5,000,000	20,004,000	50,008,000	50,008,000	50,008,000	50,008,000	50,008,000	50,008,000	175,028,000
	109동 3호	26~28층	1	160,240,000	340,510,000	-	500,750,000	5,000,000	20,037,500	50,075,000	50,075,000	50,075,000	50,075,000	50,075,000	50,075,000	175,262,500
	109, 110, 112동 3호	최상층	3	170,880,000	363,120,000	-	534,000,000	5,000,000	21,7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186,900,000
84D	115동 2호	1층	1	156,409,600	332,370,400	-	488,780,000	5,000,000	19,439,000	48,878,000	48,878,000	48,878,000	48,878,000	48,878,000	48,878,000	171,073,000
	115동 2호	2층	1	157,472,000	334,628,000	-	492,100,000	5,000,000	19,605,000	49,210,000	49,210,000	49,210,000	49,210,000	49,210,000	49,210,000	172,235,000
	101동 4호 115동 2호	3~4층	3	158,217,600	336,212,400	-	494,430,000	5,000,000	19,721,500	49,443,000	49,443,000	49,443,000	49,443,000	49,443,000	49,443,000	173,050,500
	101동 4호 115동 2호	5~7층	4	158,748,800	337,341,200	-	496,090,000	5,000,000	19,804,500	49,609,000	49,609,000	49,609,000	49,609,000	49,609,000	49,609,000	173,631,500

	115동 2호	8~10층	3	158,963,200	337,796,800	-	496,760,000	5,000,000	19,838,000	49,676,000	49,676,000	49,676,000	49,676,000	49,676,000	49,676,000	173,866,000
	101동 4호 115동 2호	11~13층	4	159,174,400	338,245,600	-	497,420,000	5,000,000	19,871,000	49,742,000	49,742,000	49,742,000	49,742,000	49,742,000	49,742,000	174,097,000
	115동 2호	14~16층	3	159,388,800	338,701,200	-	498,090,000	5,000,000	19,904,500	49,809,000	49,809,000	49,809,000	49,809,000	49,809,000	49,809,000	174,331,500
	115동 2호	17~19층	3	159,600,000	339,150,000	-	498,750,000	5,000,000	19,937,500	49,875,000	49,875,000	49,875,000	49,875,000	49,875,000	49,875,000	174,562,500
	101동 4호 115동 2호	20~22층	3	159,814,400	339,605,600	-	499,420,000	5,000,000	19,971,000	49,942,000	49,942,000	49,942,000	49,942,000	49,942,000	49,942,000	174,797,000
	101동 4호	23~25층	1	160,025,600	340,054,400	-	500,080,000	5,000,000	20,004,000	50,008,000	50,008,000	50,008,000	50,008,000	50,008,000	50,008,000	175,028,000
	101동 4호 115동 2호	최상층	2	170,880,000	363,120,000	-	534,000,000	5,000,000	21,7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186,900,000

110A	102동 4호 103동 1,4호 111동 3,4호	1층	5	209,031,480	434,244,109	43,424,411	686,700,000	5,000,000	29,335,000	68,670,000	68,670,000	68,670,000	68,670,000	68,670,000	68,670,000	240,345,000
	102동 1,4호 103동 1,4호 111동 3,4호	2층	6	209,926,416	436,103,258	43,610,326	689,640,000	5,000,000	29,482,000	68,964,000	68,964,000	68,964,000	68,964,000	68,964,000	68,964,000	241,374,000
		3층	6	210,565,656	437,431,222	43,743,122	691,740,000	5,000,000	29,587,000	69,174,000	69,174,000	69,174,000	69,174,000	69,174,000	69,174,000	242,109,000
		4층	6	210,949,200	438,228,000	43,822,800	693,000,000	5,000,000	29,65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242,550,000
		5~7층	17	211,204,896	438,759,185	43,875,919	693,840,000	5,000,000	29,692,000	69,384,000	69,384,000	69,384,000	69,384,000	69,384,000	69,384,000	242,844,000
		8~10층	16	211,460,592	439,290,371	43,929,037	694,680,000	5,000,000	29,734,000	69,468,000	69,468,000	69,468,000	69,468,000	69,468,000	69,468,000	243,138,000
	102동 4호 103동 1,4호 111동 3,4호	11~13층	15	211,716,288	439,821,556	43,982,156	695,520,000	5,000,000	29,776,000	69,552,000	69,552,000	69,552,000	69,552,000	69,552,000	69,552,000	243,432,000
		14~16층	15	211,971,984	440,352,742	44,035,274	696,360,000	5,000,000	29,818,000	69,636,000	69,636,000	69,636,000	69,636,000	69,636,000	69,636,000	243,726,000
		17~19층	14	212,227,680	440,883,927	44,088,393	697,200,000	5,000,000	29,860,000	69,720,000	69,720,000	69,720,000	69,720,000	69,720,000	69,720,000	244,020,000
	102동 4호 103동 1,4호 111동 3호	20~22층	12	212,483,376	441,415,113	44,141,511	698,040,000	5,000,000	29,902,000	69,804,000	69,804,000	69,804,000	69,804,000	69,804,000	69,804,000	244,314,000
	102동 4호 103동 1,4호	23~25층	8	212,739,072	441,946,298	44,194,630	698,880,000	5,000,000	29,944,000	69,888,000	69,888,000	69,888,000	69,888,000	69,888,000	69,888,000	244,608,000
	102동 1,4호 103동 1호	26~28층	5	212,994,768	442,477,484	44,247,748	699,720,000	5,000,000	29,986,000	69,972,000	69,972,000	69,972,000	69,972,000	69,972,000	69,972,000	244,902,000
	102동 4호 103동 1,4호 111동 3,4호	최상층	5	219,898,560	456,819,491	45,681,949	722,400,000	5,000,000	31,120,000	72,240,000	72,240,000	72,240,000	72,240,000	72,240,000	72,240,000	252,840,000

110B	103동 2호	1층	1	208,894,140	434,368,964	43,436,896	686,700,000	5,000,000	29,335,000	68,670,000	68,670,000	68,670,000	68,670,000	68,670,000	68,670,000	240,345,000
	102,103동 2호	2층	2	209,788,488	436,228,647	43,622,865	689,640,000	5,000,000	29,482,000	68,964,000	68,964,000	68,964,000	68,964,000	68,964,000	68,964,000	241,374,000

		3층	2	210,427,308	437,556,993	43,755,699	691,740,000	5,000,000	29,587,000	69,174,000	69,174,000	69,174,000	69,174,000	69,174,000	69,174,000	242,109,000
		4층	2	210,810,600	438,354,000	43,835,400	693,000,000	5,000,000	29,65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242,550,000
		5~7층	6	211,066,128	438,885,338	43,888,534	693,840,000	5,000,000	29,692,000	69,384,000	69,384,000	69,384,000	69,384,000	69,384,000	69,384,000	242,844,000
		8~10층	6	211,321,656	439,416,676	43,941,668	694,680,000	5,000,000	29,734,000	69,468,000	69,468,000	69,468,000	69,468,000	69,468,000	69,468,000	243,138,000
		11~13층	6	211,577,184	439,948,015	43,994,801	695,520,000	5,000,000	29,776,000	69,552,000	69,552,000	69,552,000	69,552,000	69,552,000	69,552,000	243,432,000
		14~16층	6	211,832,712	440,479,353	44,047,935	696,360,000	5,000,000	29,818,000	69,636,000	69,636,000	69,636,000	69,636,000	69,636,000	69,636,000	243,726,000
		17~19층	6	212,088,240	441,010,691	44,101,069	697,200,000	5,000,000	29,860,000	69,720,000	69,720,000	69,720,000	69,720,000	69,720,000	69,720,000	244,020,000
		20~22층	6	212,343,768	441,542,029	44,154,203	698,040,000	5,000,000	29,902,000	69,804,000	69,804,000	69,804,000	69,804,000	69,804,000	69,804,000	244,314,000
		23~25층	6	212,599,296	442,073,367	44,207,337	698,880,000	5,000,000	29,944,000	69,888,000	69,888,000	69,888,000	69,888,000	69,888,000	69,888,000	244,608,000
		26~28층	6	212,854,824	442,604,705	44,260,471	699,720,000	5,000,000	29,986,000	69,972,000	69,972,000	69,972,000	69,972,000	69,972,000	69,972,000	244,902,000
		최상층	2	219,754,080	456,950,836	45,695,084	722,400,000	5,000,000	31,120,000	72,240,000	72,240,000	72,240,000	72,240,000	72,240,000	72,240,000	252,840,000
110C	103동 3호	1층	1	208,894,140	434,368,964	43,436,896	686,700,000	5,000,000	29,335,000	68,670,000	68,670,000	68,670,000	68,670,000	68,670,000	68,670,000	240,345,000
		2층	2	209,788,488	436,228,647	43,622,865	689,640,000	5,000,000	29,482,000	68,964,000	68,964,000	68,964,000	68,964,000	68,964,000	68,964,000	241,374,000
		3층	2	210,427,308	437,556,993	43,755,699	691,740,000	5,000,000	29,587,000	69,174,000	69,174,000	69,174,000	69,174,000	69,174,000	69,174,000	242,109,000
		4층	2	210,810,600	438,354,000	43,835,400	693,000,000	5,000,000	29,65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242,550,000
		5~7층	6	211,066,128	438,885,338	43,888,534	693,840,000	5,000,000	29,692,000	69,384,000	69,384,000	69,384,000	69,384,000	69,384,000	69,384,000	242,844,000
		8~10층	6	211,321,656	439,416,676	43,941,668	694,680,000	5,000,000	29,734,000	69,468,000	69,468,000	69,468,000	69,468,000	69,468,000	69,468,000	243,138,000
		11~13층	6	211,577,184	439,948,015	43,994,801	695,520,000	5,000,000	29,776,000	69,552,000	69,552,000	69,552,000	69,552,000	69,552,000	69,552,000	243,432,000
		14~16층	6	211,832,712	440,479,353	44,047,935	696,360,000	5,000,000	29,818,000	69,636,000	69,636,000	69,636,000	69,636,000	69,636,000	69,636,000	243,726,000
		17~19층	6	212,088,240	441,010,691	44,101,069	697,200,000	5,000,000	29,860,000	69,720,000	69,720,000	69,720,000	69,720,000	69,720,000	69,720,000	244,020,000
		20~22층	6	212,343,768	441,542,029	44,154,203	698,040,000	5,000,000	29,902,000	69,804,000	69,804,000	69,804,000	69,804,000	69,804,000	69,804,000	244,314,000
		23~25층	6	212,599,296	442,073,367	44,207,337	698,880,000	5,000,000	29,944,000	69,888,000	69,888,000	69,888,000	69,888,000	69,888,000	69,888,000	244,608,000
		26~28층	5	212,854,824	442,604,705	44,260,471	699,720,000	5,000,000	29,986,000	69,972,000	69,972,000	69,972,000	69,972,000	69,972,000	69,972,000	244,902,000
		최상층	2	219,754,080	456,950,836	45,695,084	722,400,000	5,000,000	31,120,000	72,240,000	72,240,000	72,240,000	72,240,000	72,240,000	72,240,000	252,840,000
110D	111동 1호	1층	1	209,031,480	434,244,109	43,424,411	686,700,000	5,000,000	29,335,000	68,670,000	68,670,000	68,670,000	68,670,000	68,670,000	68,670,000	240,345,000
		2층	1	209,926,416	436,103,258	43,610,326	689,640,000	5,000,000	29,482,000	68,964,000	68,964,000	68,964,000	68,964,000	68,964,000	68,964,000	241,374,000
		3층	1	210,565,656	437,431,222	43,743,122	691,740,000	5,000,000	29,587,000	69,174,000	69,174,000	69,174,000	69,174,000	69,174,000	69,174,000	242,109,000
		4층	1	210,949,200	438,228,000	43,822,800	693,000,000	5,000,000	29,65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242,550,000
		5~7층	3	211,204,896	438,759,185	43,875,919	693,840,000	5,000,000	29,692,000	69,384,000	69,384,000	69,384,000	69,384,000	69,384,000	69,384,000	242,844,000
		8~10층	3	211,460,592	439,290,371	43,929,037	694,680,000	5,000,000	29,734,000	69,468,000	69,468,000	69,468,000	69,468,000	69,468,000	69,468,000	243,138,000

		11~13층	2	211,716,288	439,821,556	43,982,156	695,520,000	5,000,000	29,776,000	69,552,000	69,552,000	69,552,000	69,552,000	69,552,000	69,552,000	243,432,000
		14~16층	3	211,971,984	440,352,742	44,035,274	696,360,000	5,000,000	29,818,000	69,636,000	69,636,000	69,636,000	69,636,000	69,636,000	69,636,000	243,726,000
		17~19층	3	212,227,680	440,883,927	44,088,393	697,200,000	5,000,000	29,860,000	69,720,000	69,720,000	69,720,000	69,720,000	69,720,000	69,720,000	244,020,000
		20~22층	3	212,483,376	441,415,113	44,141,511	698,040,000	5,000,000	29,902,000	69,804,000	69,804,000	69,804,000	69,804,000	69,804,000	69,804,000	244,314,000
		23~25층	3	212,739,072	441,946,298	44,194,630	698,880,000	5,000,000	29,944,000	69,888,000	69,888,000	69,888,000	69,888,000	69,888,000	69,888,000	244,608,000
		26~28층	3	212,994,768	442,477,484	44,247,748	699,720,000	5,000,000	29,986,000	69,972,000	69,972,000	69,972,000	69,972,000	69,972,000	69,972,000	244,902,000
		최상층	1	219,898,560	456,819,491	45,681,949	722,400,000	5,000,000	31,120,000	72,240,000	72,240,000	72,240,000	72,240,000	72,240,000	72,240,000	252,840,000
135	111동 2호	2층	1	258,581,752	539,725,680	53,972,568	852,280,000	5,000,000	37,614,000	85,228,000	85,228,000	85,228,000	85,228,000	85,228,000	85,228,000	298,298,000
		3층	1	259,367,558	541,365,856	54,136,586	854,870,000	5,000,000	37,743,500	85,487,000	85,487,000	85,487,000	85,487,000	85,487,000	85,487,000	299,204,500
		4층	1	259,367,558	541,365,856	54,136,586	854,870,000	5,000,000	37,743,500	85,487,000	85,487,000	85,487,000	85,487,000	85,487,000	85,487,000	299,204,500
		5층	1	259,683,094	542,024,460	54,202,446	855,910,000	5,000,000	37,795,500	85,591,000	85,591,000	85,591,000	85,591,000	85,591,000	85,591,000	299,568,500
		6층	1	259,683,094	542,024,460	54,202,446	855,910,000	5,000,000	37,795,500	85,591,000	85,591,000	85,591,000	85,591,000	85,591,000	85,591,000	299,568,500
		7층	1	259,683,094	542,024,460	54,202,446	855,910,000	5,000,000	37,795,500	85,591,000	85,591,000	85,591,000	85,591,000	85,591,000	85,591,000	299,568,500
		8층	1	259,995,596	542,676,731	54,267,673	856,940,000	5,000,000	37,847,000	85,694,000	85,694,000	85,694,000	85,694,000	85,694,000	85,694,000	299,929,000
		9층	1	259,995,596	542,676,731	54,267,673	856,940,000	5,000,000	37,847,000	85,694,000	85,694,000	85,694,000	85,694,000	85,694,000	85,694,000	299,929,000
		10층	1	259,995,596	542,676,731	54,267,673	856,940,000	5,000,000	37,847,000	85,694,000	85,694,000	85,694,000	85,694,000	85,694,000	85,694,000	299,929,000
		11층	1	260,311,132	543,335,335	54,333,533	857,980,000	5,000,000	37,899,000	85,798,000	85,798,000	85,798,000	85,798,000	85,798,000	85,798,000	300,293,000
		13층	1	260,311,132	543,335,335	54,333,533	857,980,000	5,000,000	37,899,000	85,798,000	85,798,000	85,798,000	85,798,000	85,798,000	85,798,000	300,293,000
		14층	1	260,623,634	543,987,605	54,398,761	859,010,000	5,000,000	37,950,500	85,901,000	85,901,000	85,901,000	85,901,000	85,901,000	85,901,000	300,653,500
		17층	1	267,225,618	557,767,620	55,776,762	880,770,000	5,000,000	39,038,500	88,077,000	88,077,000	88,077,000	88,077,000	88,077,000	88,077,000	308,269,500
		21층	1	267,541,154	558,426,224	55,842,622	881,810,000	5,000,000	39,090,500	88,181,000	88,181,000	88,181,000	88,181,000	88,181,000	88,181,000	308,633,500
		22층	1	267,541,154	558,426,224	55,842,622	881,810,000	5,000,000	39,090,500	88,181,000	88,181,000	88,181,000	88,181,000	88,181,000	88,181,000	308,633,500
		23층	1	267,856,690	559,084,827	55,908,483	882,850,000	5,000,000	39,142,500	88,285,000	88,285,000	88,285,000	88,285,000	88,285,000	88,285,000	308,997,500
		24층	1	267,856,690	559,084,827	55,908,483	882,850,000	5,000,000	39,142,500	88,285,000	88,285,000	88,285,000	88,285,000	88,285,000	88,285,000	308,997,500
		26층	1	268,169,192	559,737,098	55,973,710	883,880,000	5,000,000	39,194,000	88,388,000	88,388,000	88,388,000	88,388,000	88,388,000	88,388,000	309,358,000
		27층	1	268,169,192	559,737,098	55,973,710	883,880,000	5,000,000	39,194,000	88,388,000	88,388,000	88,388,000	88,388,000	88,388,000	88,388,000	309,358,000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59	68A	68B	77	84A	84B	84C	84D	110A	110B	110C	110D	135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	1	-	1	6	1	1	1	-	-	-	-	-	11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	1	4	1	-	1	-	-	-	-	-	8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1	-	1	4	1	-	1	-	-	-	-	-	8
	장애인	-	1	-	1	4	-	1	-	-	-	-	-	-	7
	중소기업 근로자	-	1	-	1	7	1	1	-	-	-	-	-	-	1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5	-	5	25	4	3	3	13	6	5	3	2	74
신혼부부 특별공급		1	12	1	11	58	9	8	6	-	-	-	-	-	10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1	-	1	7	1	1	1	4	2	2	1	-	21
생애최초 특별공급		-	5	-	4	23	4	3	2	-	-	-	-	-	41
합 계		1	28	1	26	138	22	18	15	17	8	7	4	2	287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공공)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공공)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p>* <b>기존주택 처분 조건</b>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li> <li>-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li> <li>-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li> </ul> <p>→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b>부동산가액 산정</b>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b>외의 세대원</b>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li> </ul>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li> <li>-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li> </ul>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b>기존주택 처분 조건</b> 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p> <p>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처리방법</th></tr> </thead> <tbody> <tr> <td>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b>부적격</b> 처리</td></tr> <tr> <td>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 <table border="1"> <thead> <tr> <th>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h><th>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b>무효</b> 처리</th></tr> </thead> <tbody>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body> </table> </td></tr> <tr> <td></td><td>모두 <b>부적격</b> 처리</td></tr> </tbody> </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b>부적격</b>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table border="1"> <thead> <tr> <th>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h><th>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b>무효</b> 처리</th></tr> </thead> <tbody>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body> </table>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b>무효</b> 처리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b>부적격</b>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table border="1"> <thead> <tr> <th>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h><th>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b>무효</b> 처리</th></tr> </thead> <tbody>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body> </table>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b>무효</b> 처리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b>무효</b> 처리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모두 <b>부적격</b> 처리												
무주택 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등·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p>■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p>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b>무주택세대구성원</b> 요건</li> <li>-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b>무주택세대주</b> 요건</li> </ul>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m<sup>2</sup> 이하 주택형에 한함)</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ul> </li> <li>-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m<sup>2</sup> 이하 주택형에 한함)</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ul> </li> </ul>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김해시, 경상남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 (울산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m<sup>2</sup> 이하</td> <td>200만원</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m<sup>2</sup> 이하</td> <td>300만원</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m<sup>2</sup> 이하</td> <td>400만원</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500만원</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김해시, 경상남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용면적 85m <sup>2</sup>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m <sup>2</sup>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m <sup>2</sup>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김해시, 경상남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용면적 85m <sup>2</sup>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m <sup>2</sup>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m <sup>2</sup>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 합니다.																				

#### 4-1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m<sup>2</sup>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5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li> </ul>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li> <li>■ 장애인 : 경상남도청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부산광역시청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장애인복지과</li> <li>■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경남동부보훈지청 복지증진국</li> <li>■ 중소기업 근로자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ul>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li> </ul> </li> <li>■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li> </ul> </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li> <li>■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김해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김해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li> <li>■ ②배점</li> </ul>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계	100	기준	점수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 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경상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li> <li>*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li> </ul>
<p>※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p> <p>(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p> <p>(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p> <p>(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p> <p>(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p>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li> <li>■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li> <li>■ ①소득구분</li> </ul>							
당첨자 선정방법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p>※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p> <p>※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김해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p>								
<p>■ ②순위</p>								
<table border="1"> <thead> <tr> <th>순위</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1순위</td><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tr> <tr> <td>2순위</td><td>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td></tr> </tbody> </table>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p>■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김해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김해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p>								

##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 소득기준

### - 소득 확인 시점

비고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11.07.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자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li> </ul> </li> <li>■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li> </ul> </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ul> </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li> <li>■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김해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김해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li> <li>■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가점항목</th> <th>가점상한</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9">①무주택기간</td> <td rowspan="9">32</td> <td>만30세 미만 미혼자</td> <td>0</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8</td> </tr> <tr> <td>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0</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4</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2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6</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24</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8</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26</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28</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12</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30</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14</td> <td>15년 이상</td> <td>32</td> </tr> <tr> <td>7년 이상 ~ 8년 미만</td> <td>16</td> <td></td> <td></td> </tr> <tr> <td rowspan="4">②부양가족수</td> <td rowspan="4">35</td> <td>0명</td> <td>5</td> <td>4명</td> <td>25</td> </tr> <tr> <td>1명</td> <td>10</td> <td>5명</td> <td>30</td> </tr> <tr> <td>2명</td> <td>15</td> <td>6명 이상</td> <td>35</td> </tr> <tr> <td>3명</td> <td>20</td> <td></td> <td></td> </tr> <tr> <td rowspan="10">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 <td rowspan="10">17</td> <td>6개월 미만</td> <td>1</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0</td> </tr> <tr> <td>6개월 이상 ~ 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11</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3</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1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4</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13</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5</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14</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6</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15</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7</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16</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8</td> <td>15년 이상</td> <td>17</td> </tr> <tr> <td>7년 이상 ~ 8년 미만</td> <td>9</td> <td></td> <td></td> </tr> <tr> <td colspan="6" style="text-align: center;">※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td></tr>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td></tr> </tbody> </table>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li> <li>*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li> </ul> </li> </ul>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li> </ul> </li> <li>■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li> </ul>

#### 4-5

####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41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li> </ul> </li> <li>※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ul> </li> <li>■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li> <li>-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li> <li>*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li> <li>*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li> </ul> </li> </ul> </li> <li>■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li> <li>*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li> </ul> </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li> <li>■ ①소득구분</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 <th>소득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김해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김해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11.07.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11,528,499원	11,151,515원~ 13,724,941원	11,740,363원~ 14,449,677원	12,653,013원~ 15,572,938원	13,565,662원~ 16,696,198원	14,478,312원~ 17,819,459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 <td></td><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 <td></td><td>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li> <li>-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li> <li>■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li> </ul>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b>6개월</b>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b>6개월</b>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b>6개월</b>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ul> </li> <li>-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김해시 및 경상남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 (울산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00만원</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300만원</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400만원</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500만원</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김해시 및 경상남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김해시 및 경상남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li> <li>-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li> <li>-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li> </ul> </li> <li>■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김해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김해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li> <li>■ ②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가점제</th> <th>추첨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60㎡ 이하</td> <td>40%</td> <td>60%</td> </tr> <tr> <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 <td>40%</td> <td>60%</td> </tr> <tr> <td>전용면적 85㎡ 초과</td> <td>-</td> <td>100%</td> </tr> </tbody> </table>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1년 미만	1	2년 이상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p> <p>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p> <p>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p>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p>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p>

	<table border="1" data-bbox="302 96 2139 334"> <tr> <td data-bbox="302 96 527 207">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td data-bbox="527 96 2139 207">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td></tr> <tr> <td data-bbox="302 207 527 334">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td><td data-bbox="527 207 2139 334">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td></tr> </table> <p data-bbox="302 361 975 393"><b>■ ③청약통장 가입기간</b>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p> <ul data-bbox="325 401 1233 461"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li> </ul>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비고	<p data-bbox="302 520 661 552"><b>■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b></p> <ul data-bbox="325 560 1962 626"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li> <li>-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li> </ul>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단,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계층에 한함.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자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th>본인서명확인 방식</th></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li> <li>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b>이용방법</b>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li> </ul>
공고단지 청약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li> <li><b>세대원 등록방법</b>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li> <li><b>이용방법</b>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li> </ul>
당첨자발표 서비스	<p><b>청약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조회방법</b>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li> <li><b>조회기간</b> : 2025.11.26.(수) ~ 2025.12.05.(금) (10일간)</li> <li>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li> <li>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li> <li>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li> </ul>
	<p><b>문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제공일시</b> : 2025.11.26.(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li> <li><b>제공대상</b>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li> <li>*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 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 자격(거주지역, 주택 소유 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난 후 청약 바랍니다.

※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 가입 및 인증서 등을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유효한 인증서 등을 이미 소유하신 고객은 추가 발급받으실 필요가 없으며, 청약접수일 전에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고객께서는 미리 갱신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자격 착오 기재 등(수정 불가)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 및 청약 접수 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자격 확인 서류 제출
대상	특별 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 기간	2025.11.27.(목) ~ 2025.12.03.(수) 7일간 / 10:00 ~ 16:00
제출 장소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46, 김해 안동 에피트 견본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 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한 당첨자의 경우 계약 체결 시 진행이 늦어질 수 있음. 또한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명단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input type="radio"/>		특별공급신청서 / 서약서	본인	견본주택 비치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특별공급신청서 생략
	<input type="radio"/>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	견본주택 비치
	<input type="radi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제3자 대리신청 및 대리계약은 불가
	<input type="radi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신규 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input type="radi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청약 자격요건 및 해외 장기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본인	혼인신고일 등 혼인관계 확인(본인 및 배우자 포함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input type="radio"/>		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비속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를 설정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발급)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분리세대)에 한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발급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배우자/직계존속	재혼가정의 자녀(청약자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로서 청약자(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input type="radio"/>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시
		<input type="radio"/>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견본주택 비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input type="radio"/>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주택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①, ②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input type="radi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배우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포함)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를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제출 대상자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input type="radio"/>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input type="radio"/>	해당 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해당 기관에서 신청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추천 대상자에 대하여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인정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또는 인증서, 추천명부로 접수, 인터넷 청약( <a href="https://www.applyhome.co.kr">https://www.applyhome.co.kr</a> )한 경우 생략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input type="radio"/>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본인	견본주택에 비치
	<input type="radio"/>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포함'으로 발급)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input type="radi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국내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input type="radi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input type="radi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input type="radio"/>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확인서	본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input type="radi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내역을 포함하여 발급/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input type="radio"/>	소득증빙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아래 [표1]신혼부부특별공급 및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배우자의 직계존 · 비속이 당첨자의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당첨자(당첨자의 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정약한 경우 "상세"로 발급 •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국내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부동산소유현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분리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a href="http://www.iros.go.kr">www.iros.go.kr</a> )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아래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서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배우자 분리세대의 세대원 포함)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아래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노부모부양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직계존속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제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기록대조일 : "직계비속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input type="radio"/>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확인	본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input type="radio"/>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참조) ※ 아래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 증빙서류 참고하여 발급	
	<input type="radi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내역을 포함하여 발급/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input type="radio"/> 소득증빙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아래 [표1]신혼부부특별공급 및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당첨자(당첨자의 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등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청약한 경우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input type="radi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국내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input type="radi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input type="radi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input type="radio"/> 부동산소유현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분리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a href="http://www.iros.go.kr">www.iros.go.kr</a> )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아래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input type="radio"/>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	본인 및 세대원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서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배우자 분리세대의 세대원 포함)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아래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input type="radio"/>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input type="radio"/> 인감증명서	본인(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계약 청약 위임용(본인 발급분 / 대리인 발급분 불가) ※ 단, 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input type="radio"/>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와 날인 대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외)	
	<input type="radio"/> 위임장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input type="radio"/>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2020.12.21. 이후 신규 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함(직계존비속 포함)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input type="radio"/>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input type="radio"/>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본인 이외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표기 및 "주소변동이력" 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에 사업주체가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해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 [표1]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 자료	발급처
근로자	<p>일반근로자</p> <p>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전년도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p> <p>※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p>	<p>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p>
	<p>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p> <p>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명(근로계약서 또는 동일 호봉인 직급자의 근로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p> <p>※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상기 방식 역시 불가하다면 근로(연봉)계약서상의 총급여를 월할계산하여 추정)</p>	<p>①,②,③ 해당 직장</p>
	<p>전년도 전직자</p> <p>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원본(원본, 직인날인)</p>	<p>①,② 해당 직장</p>
	<p>직장 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자</p> <p>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p> <p>※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p>	<p>① 해당 직장 ② 흠택스</p>
자영업자	<p>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p> <p>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p>	<p>①,② 세무서</p>
	<p>신규사업자 등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p> <p>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국민연금 가입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경우만 인정) ③ 국민연금 미가입자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p>	<p>① 세무서 또는 등기소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③ 세무서</p>
	<p>법인 대표자</p> <p>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재무제표 원본 및 원천징수이행명세서 ③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p>	<p>①,③ 해당 직장 / 세무서 ② 세무서 ④ 등기소</p>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p>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p>	<p>①,② 해당 직장 / 세무서</p>
국민기초생활수급자	<p>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p>	<p>① 행정복지센터</p>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p>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p>	<p>① 해당 직장/세무서 ② 해당 직장</p>

	<p>※ 상기 서류가 없는 금년도 신규 취업의 경우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프리랜서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과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 필수 제출</p>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p>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 견본주택에 비치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필수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p>	<p>① 접수장소 (견본주택) ② 세무서</p>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세대)	<p>① 출산휴가기간이 있는 경우 출산 출산 전휴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 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p>	<p>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 직장</p>

※ 상기 소득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 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입증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구분	확인자격	증빙제출서류	발급처
자격입증 기본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 직장/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 1년이내(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 포함/ 종합소득세 납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 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p>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p> <p>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②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 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한함)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추가 제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p>	<p>①,② 세무서 ③,④ 해당 직장/세무서</p>

※ 상기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는 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통산 5년의 납부실적)이며,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증빙서류는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며, 세무서 또는 해당직장에서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 전체 및 성명'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인정됩니다.

###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산 입증 [자격 검증 제출 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 포함) 전원의 자산 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 입증 제출 서류	발급처
------	-------------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로 재산세 내역 발급)</li> <li>②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li> <li>③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li> <li>④ 공동(개별) 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li> <li>⑤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주택 등)인 경우]</li> <li>⑥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 'ETAX 이용안내 &gt; 조회/발급 &gt; 주택외건물 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li> <li>- 서울특별시 외 : '위택스 &gt; 지방세정보 &gt;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위택스(<a href="http://www.wetax.go.kr">www.wetax.go.kr</a>)</li> <li>②, ③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정부24 (<a href="http://www.iros.go.kr">www.iros.go.kr</a> / <a href="http://www.gov.kr">www.gov.kr</a>)</li> <li>④, ⑤ 행정복지센터</li> <li>⑥ 서울시 이택스(<a href="http://etax.seoul.go.kr">etax.seoul.go.kr</a>) 위택스(<a href="http://www.wetax.go.kr">www.wetax.go.kr</a>)</li> </ul>
	추가 (해당자)	<p>「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농지대장</li> <li>② 축산업 허가증</li> <li>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li> </ul>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li> <li>*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gt; 등기열람 발급 &gt; '부동산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li> <li>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자치단체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li> <li>* 위택스 &gt; 발급 &gt;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gt; 지방세 과세증명서</li> <li>*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명 / 전국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출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a href="http://www.iros.go.kr">www.iros.go.kr</a>)</li> <li>② 행정복지센터, 정부24 (<a href="http://www.gov.kr">www.gov.kr</a>)</li> </ul>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상기 자산입증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를 포함 합니다.

##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서약서	본인	견본주택 비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	견본주택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 (신청자용)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받으시기 바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제3자 대리신청 및 대리계약은 불가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 첨부)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 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 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input type="radi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input type="radio"/>	복무확인서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복무기간 명시)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가 분리 되어있는 경우(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참고하여 발급)
해외근로자 (단신부임)	<input type="radio"/>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주택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①, ②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기체류자의 경우 생업체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input type="radi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배우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포함)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를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제출 대상자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input type="radio"/>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심부임 인정 불가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input type="radio"/>	가점제 산정 기준표	본인	가점제 당첨자인 경우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input type="radio"/>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input type="radio"/>	당첨사실 확인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input type="radi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input type="radi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기록대조일 : "직계존속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제외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input type="radi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input type="radi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기록대조일: "직계비속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input type="radio"/>	인감증명서	당첨자	인감증명서 및 온라인발급 인감증명서 / 용도 : 청약 자격 확인 위임용 / 본인발급분에 한함 ※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서류제출 및 계약/제출처:HL디앤아이한라(주))	
	<input type="radio"/>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인감 대조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가능	
	<input type="radio"/>	위임장		청약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input type="radio"/>	신분증, 인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함(직계존비속 포함)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input type="radio"/>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본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input type="radio"/>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분양사무소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또한,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 상기서류 이외의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 계약 일정 및 계약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서류와 해당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간	방법	비교
당첨자 계약 체결	2025.12.08.(월) ~ 2025.12.10.(수) 10:00 ~ 16:00	김해 안동 에피트 견본주택 방문 계약	견본주택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2446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 제한사항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동호수 추첨 및 계약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 계약 시 구비 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input type="radio"/>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input type="radio"/>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input type="radio"/>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인감 대조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가능
	<input type="radio"/>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input type="radio"/>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input type="radio"/>		수입인지(인지세)	본인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아파트 및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 :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input type="radi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및 온라인발급 인감증명서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발급분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대리인 위임 불가 / 본인발급분에 한함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서류제출 및 계약/ 제출처 : HL디앤아이한라(주))
		<input type="radio"/>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input type="radio"/>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일체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인감증명서	당첨자	인감증명서 및 온라인발급 인감증명서 / 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 본인발급분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대리인 위임 불가 ※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발급용도(직접작성): 서류제출 및 계약/ 제출처 : HL디앤아이한라(주))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input type="radio"/>		인감도장	당첨자	인감증명서 인감 대조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가능
	<input type="radio"/>		위임장	당첨자	청약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위임 불가
	<input type="radio"/>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함(직계존비속 포함)
		<input type="radio"/>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input type="radio"/>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PC 및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지세 납부금액 안내 : 인지세법 제3조 1항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번호	예금주명
분양 대금 납부 계좌	BNK 경남은행	207-0215-2573-07	코리아신탁(주)

-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 확장비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금은 상기 명시된 계약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수납 불가)
- ※ 계약금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입금 시에는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예시 : 103동 1501호 흥길동 → '1031501흥길동')
- ※ 상기 계약금 납부계좌 및 세대별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납부기일을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흥보관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중도금무이자 조건이며, 총 분양대금의 60%범위 내에서 중도금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 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님,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 내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 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대출의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중도금 대출기관은 사업주체가 선정합니다.
-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자체가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우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 비율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사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 대출보증 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일선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신용 불량 거래자, 타 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시 중도금무이자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부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대출 협약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시에는 중도금대출이 불가합니다.
- 대출 약정기간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개시일 전일까지로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 전일 납입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우선 부담(납부)하며(단,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대출 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주체의 중도금 무이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발생한 중도금대출 이자는 별도의 약정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일선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취급 기관, 조건 등)이 변경 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 대출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 해야하며, 적격대출은 금융신용 불량 거래자, 타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초과, 주택도시보증 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 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 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 됩니다.)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 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 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 사유에 인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 ·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특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 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 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비용 등은 대출은행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전환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단위 : 원, VAT포함)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약식표기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중도금(10%)	잔금(70%)	비고
		계약시	2026.03.16	2027.02.16	입주지정일	
59	17,050,000	1,705,000	1,705,000	1,705,000	11,935,000	
68A, 68B	19,250,000	1,925,000	1,925,000	1,925,000	13,475,000	
77	21,450,000	2,145,000	2,145,000	2,145,000	15,015,000	
84A, 84B, 84C, 84D	23,100,000	2,310,000	2,310,000	2,310,000	16,170,000	
110A, 110B, 110C, 110D	28,600,000	2,860,000	2,860,000	2,860,000	20,020,000	
135	33,000,000	3,300,000	3,300,000	3,300,000	23,100,000	

- 타입별 확장 선택형 유형에 따라 평면이 상이하며, 확장 분양가 등 해당내용을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안내

항 목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확장 납부계좌	BNK경남은행	207-0215-2584-09	코리아신탁(주)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추가옵션 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에 유의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 101동201호 당첨자(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201홍길동'으로 기재 / 101동1102호 당첨자(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1102홍길동'으로 기재)
- 계약시 상기 계좌로 입금후 모델하우스에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모델하우스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수납불가, 신용카드 결제불가]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주체, 시공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등)될 경우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된 것으로 합니다. (수신여부에 대한 책임없음)
  -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다음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 및 관련 규정 등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는 공동주택분양 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에 따른 기준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내에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고, 계약의 해제가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홍보관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상하 세대간 확장구간 내력벽의 연속성 및 우수관, 선홍통 등의 제거로 기본형(비확장세대) 선택시 생활에 불편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 중단(성능개선, 디자인 개선, 단종 등), 특허권 분쟁, 제조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홍보관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세대 및 상부 또는 하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의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 위치와 상태, 커텐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미관을 저하하고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주방 레인지후드, 욕실 배기용 덕트가 발코니(다용도실 포함)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옆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확장 세대의 단열을 위하여 비확장 세대 및 확장 세대의 인접 벽체에 단열재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대내 실사용 폭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해당 발코니 천장 및 바닥에 상하부층의 발코니확장 여부에 따라 단열재 등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고, 해당 단열재는 제거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위치에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단, 옵션품목으로 시스템에어컨을 선택 시, 설치구간은 천장마감이 낮아지며 에어컨이 돌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다용도실 포함)를 제외하고 별도의 배수설비 및 수전은 시공되지 않고, 배수구 위치, 배수 및 우수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준공이후 발코니 구조변경을 할 경우 개별세대로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득하여야 하고 사전허가 없이 불법구조 변경하여 확장하는 행위는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공사는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진행 예정이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공사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 기준을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세대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여 발생되는 마감재 오염 및 훼손, 결로, 단열 등의 문제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추가 선택품목(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콘센트류, 스위치류)의 개수, 타입, 배치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VAT포함)

약식표기	제조사	구분	설치수량	설치 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6.03.16	입주지정일	
59	삼성	선택1	2	안방+거실	3,680,000	368,000	368,000	2,944,000	
		선택2	3	안방+방1+거실	4,740,000	474,000	474,000	3,792,000	
		선택3	4	안방+방1+방2+거실	5,980,000	598,000	598,000	4,784,000	
68A		선택1	2	안방+거실	3,680,000	368,000	368,000	2,944,000	
		선택2	3	안방+방1+거실	4,740,000	474,000	474,000	3,792,000	
		선택3	4	안방+방1+방2+거실	5,980,000	598,000	598,000	4,784,000	
68B		선택1	2	안방+거실	3,680,000	368,000	368,000	2,944,000	
		선택2	3	안방+방1+거실	4,740,000	474,000	474,000	3,792,000	
		선택3	4	안방+방1+방2+거실	5,980,000	598,000	598,000	4,784,000	
77		선택1	2	안방+거실	3,930,000	393,000	393,000	3,144,000	
		선택2	3	안방+방1+거실	4,850,000	485,000	485,000	3,880,000	
		선택3	4	안방+방1+방2+거실	6,120,000	612,000	612,000	4,896,000	
84A		선택1	2	안방+거실	3,930,000	393,000	393,000	3,144,000	
		선택2	3	안방+방1+거실	4,850,000	485,000	485,000	3,880,000	
		선택3	4	안방+방1+방2+거실	6,120,000	612,000	612,000	4,896,000	
84B		선택1	2	안방+거실	3,930,000	393,000	393,000	3,144,000	
		선택2	3	안방+방1+거실	4,850,000	485,000	485,000	3,880,000	
		선택3	4	안방+방1+방2+거실	6,120,000	612,000	612,000	4,896,000	
84C		선택1	2	안방+거실	3,930,000	393,000	393,000	3,144,000	
		선택2	3	안방+방1+거실	4,850,000	485,000	485,000	3,880,000	
		선택3	4	안방+방1+방2+거실	6,120,000	612,000	612,000	4,896,000	
84D		선택1	2	안방+거실	3,930,000	393,000	393,000	3,144,000	
		선택2	3	안방+방1+거실	4,850,000	485,000	485,000	3,880,000	
		선택3	4	안방+방1+방2+거실	6,120,000	612,000	612,000	4,896,000	
110A		선택1	3	안방+거실+주방	4,850,000	485,000	485,000	3,880,000	
		선택2	4	안방+거실+주방+방1	6,250,000	625,000	625,000	5,000,000	
		선택3	5	안방+거실+주방+방1+방2	7,450,000	745,000	745,000	5,960,000	
		선택4	6	안방+거실+주방+방1+방2+알파룸	8,640,000	864,000	864,000	6,912,000	
110B		선택1	3	안방+거실+주방	4,850,000	485,000	485,000	3,880,000	
		선택2	4	안방+거실+주방+방1	6,250,000	625,000	625,000	5,000,000	
		선택3	5	안방+거실+주방+방1+방2	7,450,000	745,000	745,000	5,960,000	
		선택4	6	안방+거실+주방+방1+방2+알파룸	8,640,000	864,000	864,000	6,912,000	

약식표기	제조사	구분	설치수량	설치 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6.03.16	입주지정일
110C	삼성	선택1	3	안방+거실+주방	4,850,000	485,000	485,000	3,880,000
		선택2	4	안방+거실+주방+방1	6,250,000	625,000	625,000	5,000,000
		선택3	5	안방+거실+주방+방1+방2	7,450,000	745,000	745,000	5,960,000
		선택4	6	안방+거실+주방+방1+방2+알파룸	8,640,000	864,000	864,000	6,912,000
110D	삼성	선택1	3	안방+거실+주방	4,850,000	485,000	485,000	3,880,000
		선택2	4	안방+거실+주방+방1	6,250,000	625,000	625,000	5,000,000
		선택3	5	안방+거실+주방+방1+방2	7,450,000	745,000	745,000	5,960,000
		선택4	6	안방+거실+주방+방1+방2+알파룸	8,640,000	864,000	864,000	6,912,000
135	삼성	선택1	3	안방+방1+주방	4,850,000	485,000	485,000	3,880,000
		선택2	4	안방+방1+거실+주방	6,250,000	625,000	625,000	5,000,000
		선택3	5	안방+방1+방2+거실+주방	7,450,000	745,000	745,000	5,960,000
		선택4	6	안방+방1+방2+방3+거실+주방	8,640,000	864,000	864,000	6,912,000
		선택5	7	안방+방1+방2+방3+방4+거실+주방	9,850,000	985,000	985,000	7,880,000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유의사항]

- 시스템 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시 유상옵션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 금액은 유상옵션 미 선택시 설치되는 기본 매립 냉매배관 2개소(거실, 안방)의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기본 제공되는 매립 냉매 배관은 거실(스탠드 에어컨용), 안방(벽걸이 에어컨용) 2개소에 시공되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는 기본 제공되는 냉매 매립배관 (거실, 안방)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상기 탑입별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옵션 선택에 따른 배관 길이 및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최상층의 다락층 용도로는 별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삼성전자 일반무풍형 냉방전용 제품(공기청정기능 없음)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 선택 시 실내기에서 발생하는 응축수의 드레인 배관은 탑입에 따라 발코니(다용도실 포함) 등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부 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선택시 시스템에어컨이 천장에서 돌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시스템 에어컨 계약이 불가능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또는 사업주체가 별도 지정한 기간 내 시스템 에어컨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골조 공사 완료 후 시스템 에어컨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기본 매립 냉매 배관(거실, 안방) 시공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은 시공상의 이유로 에어컨 공사 시점에 생산되는 모델로 설치되므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옵션 선택 완료 후 계약자 임의로 에어컨 및 실외기를 설치하여 냉방기능 등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인테리어 옵션

추가 옵션 선택 품목	약식표기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증도금(10%)	잔금(80%)
				계약시	'26.03.16	입주지정일
주방 벽체	엔지니어드스톤	59	주방벽체	990,000	99,000	99,000
주방 벽체	엔지니어드스톤	68A	주방벽체	1,120,000	112,000	112,000
주방 벽체	엔지니어드스톤	68B	주방벽체	1,120,000	112,000	112,000
주방 벽체	엔지니어드스톤	77	주방벽체	1,140,000	114,000	114,000
주방 벽체	엔지니어드스톤	84A	주방벽체 + 주방 장식장 벽체	1,350,000	135,000	135,000
주방 벽체	엔지니어드스톤	84B	주방벽체 + 주방 장식장 벽체	1,430,000	143,000	143,000
주방 벽체	엔지니어드스톤	84C	주방벽체 + 주방 장식장 벽체	1,410,000	141,000	141,000
주방 벽체	엔지니어드스톤	84D	주방벽체 + 주방 장식장 벽체	1,350,000	135,000	135,000
주방 벽체	엔지니어드스톤	110A	주방벽체	1,450,000	145,000	145,000
주방 벽체	엔지니어드스톤	110B	주방벽체	1,420,000	142,000	142,000
주방 벽체	엔지니어드스톤	110C	주방벽체	1,390,000	139,000	139,000
주방 벽체	엔지니어드스톤	110D	주방벽체	1,450,000	145,000	145,000
주방 벽체	엔지니어드스톤	135	주방벽체 + 주방 장식장 벽체	1,740,000	174,000	174,000
						1,392,000

- 주방 기본마감은 벽타일(600x300)+상판(엔지니어드스톤)+일반싱크볼+LPM가구마감이 설치됩니다.
- 본공사 시 엔지니어드스톤의 제조사 및 색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엔지니어드스톤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고 견본주택과 동일한 패턴으로 설치되지 않으며, 색상, 줄눈나누기 및 간격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 무상선택안내

주택형	설치위치	선택1	선택2	선택3
135	방1 목문	안방에 면하는 목문만 설치(1개소)	복도에 면하는 목문만 설치(1개소)	선택1+선택2 (목문2개소 설치)

## ■ 기타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은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임)
- 추가 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및 실물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함.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함(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유상옵션의 유형, 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입주시 동등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안내

- 유상옵션 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납부는 아래계좌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금 입금 및 유상옵션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유상옵션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예시 101동 101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유상옵션 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및 잔금 약정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옵션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납부예정일의 변동(연기 등)이 있을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하며, 이는 고지 된것으로 간주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BNK경남은행	207-0215-2561-00	코리아신탁(주)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예시) 101동 505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505홍길동"으로 기재

## 10

### 단지 여건 및 유의 사항

구분	내용
1. 일반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주택형 신청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li><li>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 및 지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정산이 필요한 면적증감에 대해서는 공급가격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하며,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li><li>공동주택의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의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li><li>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각 세대별 공급금액이 상이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li>단지 내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일부 시설을 구조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은 불가합니다.</li><li>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li><li>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해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li>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li><li>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li><li>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li><li>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li> <li>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브랜드, 디자인 등은 향후 회사의 브랜드 관리 정책에 따라 적용이 결정됩니다. 이에 본 사업장 건축물의 브랜드명, 디자인 및 색채 등은 현재 안내된 내용대로 유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계약 체결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 및 현장 여건, 주변 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li> <li>본 아파트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정부 방침에 따라 초등 돌봄서비스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단지 내 설치·운영되며, 이에 관한 협약이 김해시(또는 관할 시·군·구)와 체결됨을 안내합니다</li> <li>본 아파트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 대상」에 해당하므로 입주시기에 맞추어 국공립 어린이집이 개원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li> </ul>
2. 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허가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건축물의 색채, 형태(외벽 및 측벽 줄눈, 저층부 및 출입구, 문주 디자인,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 디자인, 옥상 및 옥탑 구조물, 세대 및 부대시설 창호 크기 및 난간 형태 및 색상 포함),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심의(또는 자문) 법규의 변경 및 시공 과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옥상 및 옥탑 구조물의 경우 구조검토 등을 통해 재료 및 마감, 부재의 크기, 디자인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및 기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향후 변경사항은 고지 예정입니다.</li> <li>대지 확정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견본주택, 아파트 배치,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조경면적 등), 각종 인쇄물상의 구획선, 아파트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거부 대지비율 면적을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고려한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밸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li> <li>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탑승 위치 등) 등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지만, 인허가 과정 및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입주민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li> <li>근린생활시설외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3.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아파트 입주시점에 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르며, 학교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li> <li>통학거리와 관련하여서는 청약 및 계약 전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li> <li>안동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입주 학생은 설립인가시 협의된 바에 따라 김해활천초등학교로 배치될 예정입니다.</li> <li>안동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입주 학생은 중학교 진학시 14학교군 내 배치가 가능하나 다만, 제14학교군 중 북부동 지역 중학교는 과밀로 운영되고 있어 원거리 학교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li> <li>안동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입주 학생은 고등학교 진학시 김해시 지역내 모든 고등학교가 진학대상 학교입니다.</li> <li>학교 배치 및 학군의 경우 관할 교육청의 정책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분양 상담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ul>

<p>4. 분양 광고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십시오.</li> <li>• 분양대상물의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이 삽입된 분양 관련 각종 홍보물(팜플렛, 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교육시설, 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이나 개발주체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에 표현된 주변환경, 부지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입주자 등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VR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시설물, 포장 등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셔야 합니다.</li> <li>• 각종 광고 및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으로 예정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신 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배치도 상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십시오.</li> <li>•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설계도서와 모형, CG 등 분양광고물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시공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시공됩니다.</li> </ul>
<p>5. 견본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에는 59, 68A, 77, 84A, 110A(탑층), 135타입의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건립 주택형 59, 68A, 77, 84A, 110A(탑층), 135타입 외 견본주택 미건립 주택형 68B, 84B, 84C, 84D, 110B, 110C, 110D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옵션의 형태 등은 견본주택 건립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형 타입별 59, 68A, 77, 84A, 84B, 84C, 84D, 110A, 110B, 110C, 110D, 135타입은 최상층 다락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미설치된 타입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주십시오.</li> <li>•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식재, 경관연출 등)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차·보도 포장, 식재, 시설물의 마감 재질, 디자인, 선형, 위치, 규모, 색채, 거리, 폭을 포함하여 주변환경과 부지 내 계획고변경에 따른 고저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의 마감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에는 인허가청에 제출된 마감재리스트에 따라 시공됩니다.</li> <li>•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추가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시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추가선택 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에서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li> <li>•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냉장고, TV, 세탁기, 건조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돋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으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li> <li>•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li> <li>• 견본주택 내 안방 비화장 밸코니에 설치된 바닥마감재 및 가구, 소품 등은 연출용으로 설치된 전시용 제품으로, 본공사시 제공되지 않으며 안방밸코니는 물쓰는 공간으로 설계되어 바닥 배수구 및 타일마감(실외기실 바닥마감과 동일한 바닥타일)이 기본설치됩니다. 또한 밸코니는 단열 및 바닥난방이 제공되지 않는 공간이며, 안방과 밸코니 사이에는 본공사시 분합문이 설치됩니다.</li> </ul>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본공사 및 하자보수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VR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 사업계획승인(변경)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내용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풍통과 수전의 위치, 환기디퓨저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소방설비로 실제와 위치/개소 등이 상이하며, 본공사 시 소방법에 따라 시공되며 위치나 수량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은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탁기 크기로 인한 세탁실 출입 등)
-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시설물, 환기구(DA),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등은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은 침실 벽체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단위세대 내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으로, 본공사 시 냉방전용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이 추가선택품목으로 제공되며 장비사양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연출용 조명기구는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온도 조절기, 일괄소등스위치, 디지털 도어록 등의 제품 사양은 동등 이상의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전시된 건조기는 전기식으로, 가스식 건조기 설치를 위한 연도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가스식 설치 불가) ※ 건조기는 전시를 위한 것으로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된 가스 배관 위치는 본 공사 시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주방가구 상부장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스마트홈 기능 홍보 및 구현은 입주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모형의 경관 조명 및 입출차 차단기는 연출된 것으로 실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류(시스템가구 포함)의 바디 및 도어 마감재는 본공사시 동등이상 제품이 설치될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조명기구는 LED조명으로 설치되며, 본 공사 시 공급사의 자재 품절, 품귀, 생산 중단(제품의 성능 개선,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 및 제조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출시에 따라 동등 이상의 유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 단지 및 주동계획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최종 사업계획승인(변경)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 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 도서 작업)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등은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관계법령에 따른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또는 지번은 계약체결 이후에 상표등록 여부 및 필지의 분할 또는 합필에 의하여 홍보물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와 가감속 차로차선은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점용료의 납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외곽 보행자도로의 일부구간이 주변도로와의 연계성으로 인해 경사가 모형에 비해 가파를 수 있으며, 계약전 현장을 확인하셔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의 각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단지 배치 및 동별,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 받을 수 있으며,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 일조량의 감소,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현상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재활용 분리수거공간, 음식물 쓰레기처리, 재활용 창고, 자전거 보관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 및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이 필요하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 복리시설, 주차 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호실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부 문주 계획으로 인접동의 저층세대에 조망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배치 상 일부동의 저층세대 및 특정세대는 일조권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내에 비치된 단지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동, 106동, 110동, 111동, 115동 하부에 기계실, 발전기실, 우수저류조, DA 등이 위치하여 사용에 따른 소음, 진동 및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부대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냉난방 및 환기시스템 실외기가 각 시설의 옥상 및 주변에 설치될 수 있으며, 향후 입점 업종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및 열기,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세대 및 각 동의 저층부 인접세대는 필로티 및 중앙광장 등 공동개방공간을 사용하는 입주민에 의한 소음 및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서는 단지 내 야간조명 효과, 야간 시 차량 진출입,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용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과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 탑라이트,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쓰레기 및 재활용 보관소, 자전거 보관소 등의 설치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함(재활용 보관소 포함)은 동 당 1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다만 단지 여건상 일부 동은 인접동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세대 위치 및 주동 출입구의 위치에 따라 이동거리가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도로, 필로티 및 저층 인접세대는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시선간섭 등의 사생활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캐노피 설치 부위 주변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창호형태, 난간종류, 조경, 고층아파트 특성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이 제한이 되며, 이 경우 승강기를 사용하여 이사하셔야 합니다.
- 단지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담장)는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의 고저차로 인해 동별로 진입동선의 위치 및 개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전 단지 모형 및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도면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단지 내 비상차로는 시공시 및 소방준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차로구간은 비상차량(소방, 이삿짐 등)의 통행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의 보행시 경사도에 따라 보행의 지장과 미끄러짐 등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외부에 계획된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 정차공간 및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부위에는 식재 및 차폐 시설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내진등급 I / 내진능력(MMI 등급) VII-0.239g입니다.
- 아파트를 포함한 본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 명칭, 경관계획 및 색채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동 표시, 동 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 내부에는 석재, 석재뿔침, 도장 등이 혼용되어 시공됩니다.
- 우편물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인 택배함은 지하4층 및 지하1층에 설치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동출입구 인근에 세대창고가 계획되어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발코니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측벽 문양,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계단실 및 승강기 훌 공용부 창의 경우 미관개선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창호 형태 및 너비/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공용부 창호의 제작사 및 사양, 위치, 크기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탑의 높이와 형태는 고도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 및 개소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인 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및 난간의 형태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동 및 외부 시설의 외관/색채 등의 공용부 설계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 개인 취향에 따라 변경될 수 없습니다.
- 101, 102, 105, 111, 114, 115동 측벽 및 상부 코어부에 조명계획을 하였으며, 인접 세대에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측벽 상향 투광 조명(101, 102, 105, 111, 114, 115동)으로 인하여, 인접 세대에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상남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기준을 충족하여 태양광(BIPV), 지열, 연료전지가 설치되며, 용량 및 위치, 개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사지붕 BIPV 설치에 따라 빛의 산란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BIPV의 사양, 용량, 위치, 크기 등에 따라 추가 및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김해시 경관가이드라인기준을 기반으로 측벽에 가야문양이 적용이 됩니다.
- 가스정압시설 및 연료전지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10동 인근에 장비반입구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5동 옥탑에는 소화수조 및 시설물이 설치되므로, 인접세대에서는 이에 대한 소음, 진동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에 따라 지열기계실, 연료전지실이 배치되며, 위치 및 공급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따라 지역정압기가 설치되어 소음 및 조망 등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지역정압기 설치를 위한 부지 점용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며, 입주민께서는 해당 점용계약의 내용을 조건없이 승계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도로, 비상차로의 폭, 경계석 위치, 형태, 회차동선, 회전반경 등은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와 내부에는 레벨 차이로 옹벽(L형옹벽, 자립식옹벽, 산석옹벽 등)과 조경석쌓기 같은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구간, 높이, 형태,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계단과 경사로의 레벨, 형태, 마감, 난간 높이 등은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와 단지 내 레벨 차이가 나는 구간에 투시형휀스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구간, 형태,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D/A (설비 환기구)의 노출이 있으며, 보행공간에 인접한 경우 통행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목의 수종, 규격, 식재 위치는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에 일조와 조망 간섭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방차량 활동구역 및 에어매트 주변에는 소방구조활동을 위하여 수목 식재가 제한되며, 준공시 소방점검 의견에 따라 식재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보행로, 필로티하부포장은 인조화강석블럭포장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휴게시설 중 스쿨스테이션, 티하우스, 트리하우스, 포레하우스 등에 냉난방기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유지 · 관리 · 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105동과 106동 인근에 농구장 1개소, 104동과 105동 인근에 게이트볼장 1개소와 배드민턴장 1개소, 101동 인근에 조깅트랙 1개소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에 소음, 진동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인근에 유아놀이터 1개소, 101동과 111동 인근에 어린이놀이터 1개소, 110동과 111동 인근에 어린이놀이터 1개소, 113동 인근에 어린이놀이터 1개소, 104

	<p>동 인근에 어린이놀이터 1개소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에 소음, 진동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지 내 수경시설(벽천, 바닥분수, 연못 등)은 103동과 109동 사이에 2개소, 110동과 115동 사이에 1개소가 위치하며, 일부 세대에 소음, 진동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수경시설(벽천, 바닥분수, 연못 등)의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유지·관리·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단지 내 수경시설(벽천, 바닥분수, 연못 등)은 인계 후 안전, 보건 수질관리는 관리 주체의 의무이며, 관리 소홀로 인한 오염수, 미생물 발생 등에 대하여 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있습니다.</li> <li>단지 내 자전거보관소의 설치 규모, 위치 등은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부대시설(어린이집) 상부에 옥상조경이 조성될 수 있으며,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유무, 수목, 시설물, 포장 등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형태, 색체, 마감, 패턴, 위치, 규격 등은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수경시설, 놀이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관리시설, 옥상조경 등의 조경공간 인접세대에는 소음, 진동, 시야 간섭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민 개인의 취향이나 요구사항에 따라 추가 설치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견본주택 내 모형을 통해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본 단지는 미술장식품 설치대상이며, 미술장식품은 지자체 미술작품 심의를 거쳐 선정되므로 입주민 개인의 취향이나 요구사항에 따라 변경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타사 또는 인근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의 조경 수목, 시설물, 포장의 추가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준공 후 조경 수목, 시설물, 포장 등의 유지관리 의무는 관리주체 및 입주민에게 있으며,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수목 고사, 시설물 및 포장의 하자는 시공사에 책임이 없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ul>
7.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단지는 아파트, 균린생활시설이 함께 계획된 시설로서 아파트의 주차장은 2,310대로 구성되며, 균린생활시설 주차장은 50대로 별도 계획합니다.</li> <li>전기차 충전 시스템이 주차장에 설치(급속 16대, 완속 12대, 이동형 콘센트 99대)될 예정이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추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금형 콘센트가 설치되는 일부 주차면은 일반 주차면과 공용으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li> <li>본 단지의 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102, 112, 304동에 위치하며, 균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401동에 위치하여, 인근 저층 세대는 진입램프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지상의 비상차로 등을 이용하여 각 동별 접근이 이뤄지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단지모형 등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지하주차장의 높이는 법적으로 최소 2.3m이상으로 적용되었으며, 주차 바닥면으로부터 2.7M 이하의 택배차량이 각 동별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li> <li>지하주차장은 택배차량이 모든층에 진입가능 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li> <li>배치 여건에 따라 일부 경우 주차 후 해당 동의 승강기 훌 접근의 이동거리가 멀거나 증가, 해당 동의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계약전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본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구간에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주차장 설계여건에 따라 주차장 내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며, 일부 주차면은 기둥과 간섭으로 운전석 및 보조석 승하차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주차장과 아파트 승강기 훌과의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각 주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li> <li>각동 지하출입구 편의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대수 및 위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li> <li>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헬륨, 우수조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 및 장비의 가동으로 인하여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본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은 우기 등의 기상요건에 의해 결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li> <li>주차장 바닥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되지 않습니다.</li> <li>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 부의 마감은 시공되지 않습니다.</li> <li>주차장 바닥마감은 설계에 배수 구배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li> <li>현장 여건에 따라 지하 외벽과 주차구획의 이격으로 인해 일부 주차통로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지하시설을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천창)이 노출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li> <li>우·오수 배수시설, 저수조, 빗물저수조, 기전실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하주차장, 공용부 등에 설치되는 트렌치는 구배가 없이 시공되며 일부 부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li> </ul>
8. 부대 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대복리시설은 공간만 제공되며, 집기, 비품, 운용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등은 입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운용하여합니다.</li> <li>부대복리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하여 추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 후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단지에 포함된 시설물(통신시설물, 놀이 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 시설, 수목 관리, 공용부 환기설비, 공용부 동파 방지 열선 시설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단지 내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등)은 사업주체가 사용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운용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가 직접 운용하여야 하며, 계약자(입주자)의 추가적인 요구에 의한 집기 및 비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li> <li>단지내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등)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li> <li>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을 위해 근린생활시설 수분양자 혹은 이용객의 단지 내 진입이 불가피하며, 향후 분쟁발생 시 입주민과 근린생활시설 수분양자가 관리규약에 의해 분쟁사항을 조정해야합니다.</li> <li>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직원휴게실, 경비실, 지하주차장, 재활용창고, 동전기실, 우수 펌프실, 제연웬룸,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지열기계실, MDF, 방제실, 지하저수조, 소방용수조, 우수저류조</li> <li>② 복리시설 :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입주자회의소, 어린이놀이터, 실내 운동시설, 실외 운동시설, 다함께돌봄센터, 세대창고</li> </ul> </li> <li>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계획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운동시설 : 주민운동시설-1(농구장) 105동, 주민운동시설-2(게이트볼장) 104동, 주민운동시설-3(체력단련장) 107동, 주민운동시설-4(체력단련장) 113동, 주민운동시설-5(체력단련장) 116동, 주민운동시설-6(체력단련장) 111동</li> <li>- 펌프실,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 401동 지하3층(근린생활시설용), 201동 지하5층(아파트용), 304동 피트니스 지하4층</li> <li>-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입주자회의소, 작은도서관 직원휴게실 : 301동 어린이집, 302동 경로당,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직원휴게실, 입주회의소 (109동 지하3층)</li> <li>- 어린이놀이터 : 어린이놀이터-1(104동), 어린이놀이터-2(113동), 어린이놀이터-3(110동), 어린이놀이터-4(111동)</li> </ul> </li> <li>커뮤니티시설은 지하주차장 및 지상1층의 계단을 통해서 출입이 가능합니다.</li> <li>근린생활시설 입점 업체는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으로 미확정이며, 추후 개별 분양으로 운영되는 입점업종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주동 공용부 엘리베이터 훌의 지하층은 바닥-타일,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1층은 바닥-타일,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기준층은 바닥-타일, 벽-도장 마감 기준으로 시공되며, 마감재의 품질, 품귀 시 동등 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각 실의 천정고, 창호의 크기 및 위치, 기능,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내외부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위탁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설계상 부대복리시설은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각 시설별 해당 부대복리시설의 면적은 각 해당 시설의 기타공용면적에 분배되었습니다.</li> <li>부대복리시설의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클럽)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한 체육시설업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li> <li>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입니다.</li> <li>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기본 마감이 제공되고 집기류는 일부만 제공됩니다.</li> <li>시공사는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li> <li>근린생활시설 천정공간에는 공용배관 및 공용덕트설비 등이 설치되므로, 공간이 협소할 수 있으며 공용부 또는 타 호실에 대한 유지관리시 공간확보가 필요합니다.</li> <li>근린생활시설의 인접 점포 및 단위실에서는 냄새, 소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9. 세대 평면,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견본주택 미건립세대인 68B 타입은 건립세대인 59,68A타입과 세대 마감재 및 색상 등이 동일하며,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구성, 가구길이, 가구 색상의 조합, 유상옵션의 형태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자료(분양 카탈로그 등)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 및 마감재

- 견본주택 미간립세대인 84B,84C,84D타입은 건립세대인 77,84A타입과 세대 마감재 및 색상 등이 동일하며,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구성, 가구길이, 가구 색상의 조합, 유상옵션의 형태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자료(분양 카달로그 등)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미간립세대인 110B,110C,110D타입은 건립세대인 110A(탑층),135타입과 세대 마감재 및 색상 등이 동일하며,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구성, 가구길이, 가구 색상의 조합, 유상옵션의 형태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자료(분양 카달로그 등)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단위세대의 천장고는 2,300mm(침실 기준)이며, 욕실, 실외기실, 발코니, 다용도실 등의 부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 진행하여 전타입 확장형세대로 시공됩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동·호수 등에 따라 각 시설별 공간의 크기, 창호의 크기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합니다. 또한 각 동별 계단실, 승강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여 주십시오.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향후 층간/세대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또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의 경량/중량충격음 차단성능 성능등급은 표준실험동 등에서 관련기준 절차에 따른 등급으로 실제 세대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및 절차(사후확인제도, '22.8.4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신청건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확인방법 준용)에 따라 확인한 성능등급과 다를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불박이장,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은 관련 법규에 따라 물건의 적치가 금지됩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적증감시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탁기 설치공간의 제품 설치 사이즈는 견본주택 방문하시어 확인바랍니다.
- 주방가구, 불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 등)에는 마루, 타일, 석재,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다용도실/실외기실/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허용범위 이내의 오차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공용)은 본공사 시 PVC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 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여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바, 욕실 환기 및 유지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고 해당 변색은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본공사 시 세대 내 욕실 단자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복도 또는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발코니, 다용도실 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세대 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 등)의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마루자재 및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은 자재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의 색상 및 무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본공사 시 석재, 타일자재 및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은 자재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의 색상 및 무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본공사 시 석재, 타일자재 및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은 자재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의 색상 및 무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거실 아트월, 욕실, 주방 등 타일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고 견본주택과 동일한 패턴으로 설치되지 않으며, 색상, 줄눈나누기 및 간격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현관 디딤판/걸레받이, 욕실 뒷선반, 주방 상판 및 벽체 등에 사용된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은 자재의 특성상 패턴, 색상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 본공사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나누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석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엔지니어드스톤과 인조대리석 등은 자재특성상 본공사 시 이음매가 보일 수 있으며, 본공사시 패턴 및 색상 등이 견본주택 설치세대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주방벽 타일/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 아트월 등)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마감재(마루 자재, 주방 상판, 아트월 등)는 시공방식 및 도색과정 등에 따라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고, 자재 특성상 이음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와 무관합니다.
  - 단위세대 내 바닥재인 마루바닥재의 구성 부재 중 심재(코어)의 재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일반가구/주방가구 등 마감재의 치수 및 색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 코킹 두께 및 색상등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커튼박스 길이는 천장배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사 시 욕실 천정에 급수급탕분배기와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할 예정이며, 점검구의 위치, 개소 및 크기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금속도어(현관 방화문) 및 목창호, PL창호의 문짝,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가구류(시스템 가구 등)는 과도한 하중 적재 시 처짐이 생기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가구 디테일 및 이음매 위치, 도어 나누기 등은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장은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며 냉장고 뒤쪽 벽체는 벽지로 마감됩니다.
  - 각 단위세대 목문 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시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각 단위세대 내부에 적용되는 가구의 유리, 거울류는 제품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각 단위세대 목문 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시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건립, 미건립세대는 평형별, 공간별 크기는 마감재, 가구 설치 등으로 실 시공 시 안목치수가 도면과 경미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구가 시공되는 부위의 바닥, 벽, 천장은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마루 바닥재는 자재의 수급 시점에 따라 마루코어재(바디재)가 변경될 수 있으며, 패턴과 색상이 균일하지 않거나 표면 텍스처, 폭, 두께가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석재류는 자재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본 공사 시 나눔 부위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타일 및 석재류 요철에 의한 줄눈 마감, 평활도가 균일하지 않으며, 메지와 실리콘의 색상, 규격, 사양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바닥 실리콘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 높이는 욕실화 높이와 관계없이 물막이 용도로 시공됩니다.
  - 본 공사 시 디딤석은 분할시공 될 수 있으며, 바닥단차는 시공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의 제조사 및 색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는 각 평형에 따라 가구의 형태와 규격, 마감재가 상이할 수 있으며, 가구 표면재의 무늬, 패턴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가 시공되는 부위의 바닥은 일부 난방 코일이 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 싱크대 하부에 설치되는 물끊기 홈은 본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길이 및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바닥타일의 나눔부위에 따라 평활도가 고르지 않을 수 있으며, 패턴나눔(메지) 부위가 변경 또는추가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가스계량기 및 배관 및 기구류의 세부 위치는 노출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바닥과 문틀 사이의 단차는 욕실 바닥 구배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타일 메지와 실리콘 색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바닥단차 부위는 인조석 재료분리대가 설치되며, 벽타일 시공 시 PVC재료분리대가 설치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의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건조기 설치 시 견본주택에 전시된 가전과 상이하게 돌출될 수 있으며,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 소유의 가전제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세대 현관문 디자인 및 도어락 사양은 등등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84A, 84D타입은 팬트리 창호크기의 차이일 뿐 면적 및 평형은 같습니다.</li> <li>110A, 110D타입은 알파룸 창호크기의 차이일 뿐 면적 및 평형은 같습니다.</li> </ul>
10. 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위세대 외측 창호에 방충망이 설치되며, 내측(분합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모든 창호 및 유리의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색상, 디자인, 하드웨어, 유리 사양, 개폐 방향, 설치 위치 등은 구조 검토 결과 또는 현장 여건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창호 본 공사 시 커튼박스의 길이 및 깊이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창호 특성상 창문을 닫는 순간 잠기는 부위와 창들 측면에 일부 떨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외부 창호 거실은 유리난간, 주방 및 다락은 철제난간으로 시공되며, 난간 재질 및 시공 범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84A 팬트리창호와 84D 이중창의 크기가 상이하며, 110A와 110D 알파룸 창호의 규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분양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li> <li>창호 일체형 자연 환기 시스템이 적용됩니다.</li> </ul>
11. 공용기계 전기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도 및 세대 전유 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li> <li>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시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하며,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li> <li>「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에 의거 단지 내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 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해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안테나 설치 예정 위치: 옥상층(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9동, 111동, 112동, 113동, 115동, 116동)</li> <li>- 중계장치 설치 예정 위치 : 옥상층(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9동, 111동, 112동, 113동, 115동, 116동)</li> </ul> </li> <li>지하2층(PIT(105동))</li> <li>지하3층(PIT(108동))</li> <li>지하4층(제연훼룸(101동), PIT(103동, 115동))</li> <li>건축물 내에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단지 내부에 설치되는 CCTV는 기능과 감시 범위에 따라 수량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CTV 촬영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자의 방범과 안전, 편의성을 위해 설치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단지 내 내부에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지상 개폐기, 패드, 전주, 변압기, 맨홀 등)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맨홀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특정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 침해 등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고, 시설물의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일부 동 및 일부 층은 주동 측벽에 낙뢰 예방(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을 위한 측뢰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단위세대 평면 배치와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위치 등을 확인하여 주시고,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단지 내 지상 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 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임의 사용에 의한 파손의 복구 비용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따릅니다.)</li> <li>엘리베이터 사용 시, 이사 세대의 전용 이용 또는 일부 시간대 혼잡으로 인하여, 대기시간 지연 및 사용 불가가 있을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li> </ul>

	<p>수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엘리베이터는 준공 전 일정 기간 동안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인수인계 후 운행으로 인한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책임하에 있으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엘리베이터의 속도, 인승, 설치 수량 등은 각 동의 층수 및 세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차 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인허가 내용과 다르게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동 등의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기계실/우수조 등이 설치되어 장비의 정기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배연 등으로 생활에 불편함에 초래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 부대시설, 주차장 출입구, 전기실/발전기실/기계실 등의 D.A, 부대시설의 실외기 시설,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 등에 의해 일부 특정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및 환경권 침해 등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지하 주차장 내에 전기차충전설비가 계획되어 있으나 인허가 사항이나 주차장의 구조 등에 따라 위치 등이 계획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전기차충전설비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차 대수에 전기차충전구획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주차면은 실제 주차 용도에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설치된 시설물(전기차충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경관조명, 옥외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놀이 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 시설, 수목 관리, 공용부 환기설비, 공용부 동파 방지 열선 시설, 제습장치, 냉난방기,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주동 상부(옥상, 외벽 등)는 의장용 구조물, 경관조명, 설비 통기 배관, 발전기 연도, 위성 안테나, 공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안테나, 피뢰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조망 간섭, 야간조명의 영향, 눈부심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해 일부 특정 세대는 침해를 받아 생활의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으며, 설치 용량 및 수신 감도 등에 따라 위치, 개소 및 수량이 변경되는 사항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지하 주차장 상부는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등의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무인택배함 설치 위치 및 수량은 인허가 내용 및 시공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무인택배함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복도 등의 천장 내부 공간이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관리사무소, 부대시설, 지하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실내 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12. 세대기계 전기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 내 욕실 세면기, 양변기, 주방 개수대, 쿡탑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 팬, 천장 점검구의 위치/수량, 사양, 크기,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욕실에 설치되는 급수, 급탕 분배기는 유지관리를 위해 본 공사시 설치충수 또는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절수페달, 욕실 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풍통, 설비 및 전기 각종 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배수구, 수전 및 액세서리류 등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연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욕실에 바닥난방이 설치됩니다 (단, 공용욕실의 욕조부위 및 부부욕실의 샤워부스 내부는 제외)</li> <li>• 싱크대 하부의 가구 디자인은 설비기기(온수분배기 등)가 설치됨에 따라 견본주택 사양과 내부 폭 가구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기본 전기쿡탑이 설치됨에 따라, 주방에 가스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주방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되며 레인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 및 상부장 수납공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3~10층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에는 완강기가 설치되며, 해당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자체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에는 관계법령 준수로 인한 배관 및 스프링클러 헤드가 노출되어 미관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풍통 위치와 개수는 변경 될 수 있으며, 각종 설비배관의 노출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는 비난방구간으로 설치되는 수전 및 배수배관, 스프링클러 등을 겨울철 동파에 유의해야 합니다.</li> <li>•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li> </ul>

- 84.135타입 발코니-2(다용도실)에는 손빨래볼이 설치되며, 하부장에는 급수배관 설치에 따라 수납공간이 협소합니다.
- 135타입에는 발코니-2(다용도실)에는 기본 전기쿡탑이 설치됨에 따라, 가스배관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135타입에는 발코니-2(다용도실) 전기쿡탑 상부장에는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됨에 따라 수납공간이 협소합니다.
- 자연환기 계획에 따라, 기계환기설비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단, 욕실 및 주방배기설비는 설치됩니다.
- 각 세대 주방 배기 및 욕실 배기는 당해층 직배기로 설치되며, 주위 환경여건에 따라 냄새 및 소음,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으며 배기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주방,욕실 배기드트 내부에 실내.외 온도차에 인해 결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부타입은 욕실 직배기에 따른 덕트 및 배기구가 침실구간에 설치됨에 따라 커텐박스의 깊이나 길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우물천장은 천장 내 설비배관 및 덕트로 인하여 천장고 및 길이, 크기,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텐박스 깊이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에어컨 매립배관은 안방(벽걸이 에어컨용), 거실(스탠드 에어컨용) 2개소에 설치되며,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시에는 제외됩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타입의 다락층에는 위생 및 오배수, 가스, 기계환기, 냉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타입의 다락층은 스프링클러의 동파우려가 있으므로, 겨울철 등 동파에 유의해야 합니다.
- 각 타입의 다락층의 외부공간에는 통기관이 설치되므로 냄새 등 생활상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시공되며, 개별적인 위치 변경 요청은 불가합니다.
- 세대 분전반(「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에 의거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설치)과 세대 통신 단자함(「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별표 3의 주」 3)에 의거 세대단자함은 주변의 구조물이나 설치 등에 의해 운영과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고 침수 및 결로 발생의 우려가 없는 노출된 장소(신발장, 세탁실, 베란다, 발코니 이외의 장소)에 설치)은 견본주택에서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공사 과정에서 위치나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통신 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 장치가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거실 벽면에 벽걸이 TV 설치를 위한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전기·통신용 매입배관이 파손될 수 있으니 설치 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 또는 시설물 안내서의 유의 사항을 확인 바랍니다.
- 세대 거실과 각 침실에 설치되는 통합스위치는 조명기구 점등과 소등, 대기전력 차단, 난방 온도조절의 기능이 통합된 제품으로 기능을 분리하여 개별로 설치할 수 없으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 마감재(세대 분전반, 세대 통신 단자함, 월패드, 조명기구, 배선기구, 콘센트, 통합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수량 및 사양은 발코니 확장, 추가 선택품목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덕션, 하이브리드 등 전기쿡탑 용량은 3kW 기준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며, 입주자가 추후 3kW 이상의 제품으로 별도 설치하는 경우 배선 및 배선기구의 변경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홈네트워크 설비를 이용하여 방문자 확인, 쿡탑제어, 일괄소등제어, 엘리베이터 호출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에 따른 별도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전유 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 시에만 안방 발코니에 전동식 빨래 건조대가 설치되며, 별도의 조명기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조명기구는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단종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형태 및 모양 포함)
- 일반가구, 주방가구, 시스템가구 등에 설치되는 인테리어조명은 일괄소등이 불가능하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세대 분전반의 전원 구성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시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하며,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 하자 담보 존속 기간 및 하자 보수

- 하자 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36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 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기타 하자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 39조에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 벌칙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 법령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외국인(법인·단체 포함)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외국인이 상속·경매 등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6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외국인 포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의거하여 거래가격 6억원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요) 따라서, 부동산거래의 신고와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에 따른 필요한 서류는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및 소재지 주무관청 직접 제출 등 모든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 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홍보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

##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당사는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 입주예정일

- **입주예정일** : 2029년 4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미납한 공급대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표기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호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 · 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2)

지하주차장 차로의 높이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비고
2.7m 이상	2.7m 이상	

## ■ 자금관리대리사무

- 코리아신탁(주)은 “안동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분양계약서상의 책임 등 분양계약자로의 소유권이전 책임은 사업주체인 “김해안동지역주택조합”에게 있습니다.
  - 코리아신탁(주)가 본 사업의 자금관리(분양수입금 수납 및 자금집행)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 반환 의무는 “안동지역주택조합”가 부담함을 확인하며, 향후 분양대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분양수익금계좌 잔액이 분양대금 반환액보다 작을 경우, 그의 부족분에 대한 자금조달(충당) 의무는 “안동지역주택조합”의 책임으로 이행함을 “분양계약자”는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 합니다.
  - 본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자”가 납부하는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기타 대리사무계약이 정한 필수사업비 등 분양목적물의 신축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양계약자”는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 합니다.
  - “본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 및 매매계약상 매도자의 의무 등을 “안동지역주택조합”가 부담하기로 하며, “코리아신탁(주)”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분양(매매)목적물의 하자 보수에 관한 법적 책임은 “안동지역주택조합” 및 “시공사”에게 있음을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동의 합니다.
  - 본 사업은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계법령 준수 의무는 “안동지역주택조합”의 책임으로 이행함을 확인합니다.
  - 지정된 자금관리계좌 외 분양대금 입금분에 대하여 “코리아신탁(주)”는 입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코리아신탁(주)은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수납계좌가 변경될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서 상의 수분양자 주소로 해당 내용을 우편 통지할 예정이며, “수분양자”는 이를 분명히 인지합니다.
  - 자금관리 대리사무사가 사업주체와 체결한 대리사무계약의 조약에 따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자금관리대리사무사가 관리하는 분양수입금과 자금관리업무 모두 사업주체가 포괄승계되며, 자금관리대리사무사의 업무는 종결, 면책됨을 확인합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행한 자금 집행 및 의사결정 등 행위의 법률 효과는 “안동지역주택조합”에 귀속되며, 코리아신탁(주)은 “본 사업”에 대한 단순 자금관리를 수행합니다. 이에 대하여 코리아신탁(주)은 자금관리사무 이외에 어떠한 책임과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성능등급의 표시

##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함.

구 분	내진능력(MMI 등급)
내진등급 I	VII-0.202g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회사명	감리금액(부가세 포함)	비고
건축감리	(주)태원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	5,809,790,800	
전기감리	(주)한국코아엔지니어링	1,126,051,400	
정보통신	(주)청림이앤씨	343,200,000	
소방 감리	(주)청림이앤씨	1,042,800,000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 01282025-101-0005800 호	일금 이천팔백삼십억구천사백이십삼만삼천오백원정 ₩ 283,094,233,5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돋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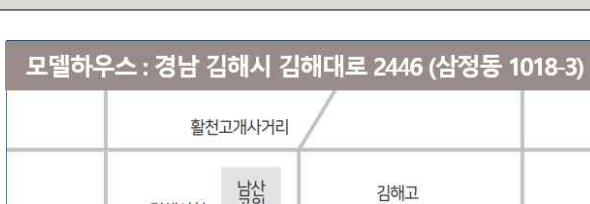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금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 공 사
상호	안동지역주택조합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주식회사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87-1(부원동, 신성빌딩)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신천동)
사업자등록번호	302-82-66748	215-81-40656

## ■ 견본주택 안내 및 유의사항

견본주택 약도		분양 안내
<b>모델하우스 :</b>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46 (삼정동 101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46 (삼정동 1018-3)</li> </ul>
부원역	 <p>The map shows the location of the Model House (모델하우스) at the intersection of Ssangjeong-ro and Gimhae-daero. Key landmarks include Gimhae City Hall (김해시청), Gimhae City Hall Station (김해시청역), Ssangjeong Station (삼정역), Donggimhae IC (동김해IC), and Megamart (메가마트). Other points of interest are Hogeuro Station (호계로 사거리), Gimhae Sports Complex (남산공원), Gimhae Station (김해고속), and Donggimhae Station (동김해). A red arrow points to the Model House loc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 업 지 : 경상남도 김해시 안동 118-1번지 일원</li> <li>■ 홈페이지 : <a href="https://brand.hldni.com/gimhae-andong/">https://brand.hldni.com/gimhae-andong/</a></li> <li>■ 분양문의 : 055-329-7511</li> </ul> <p>※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 및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우선함.)</p> <p>※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p> <p>※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상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 적용함</p>